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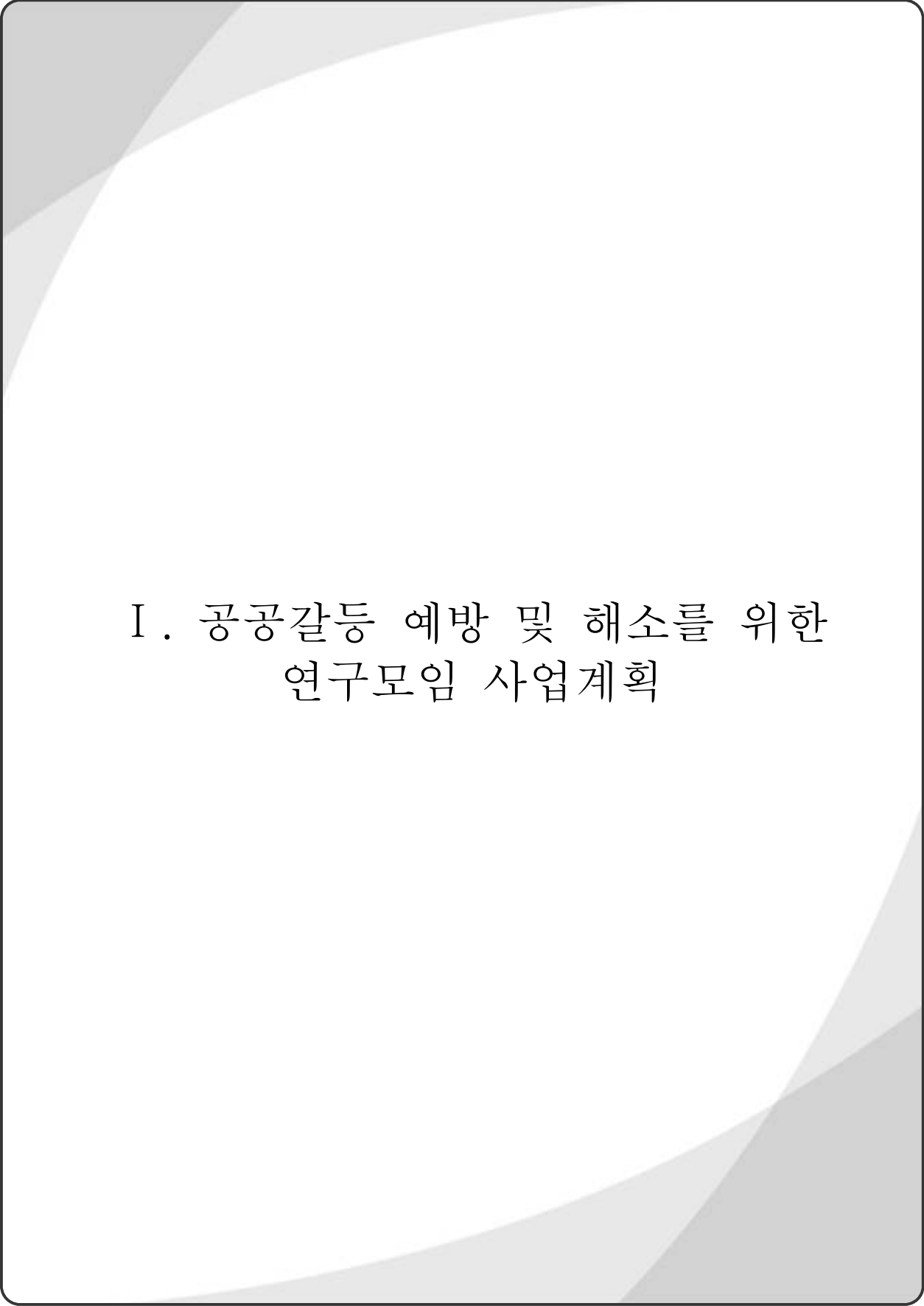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목 차

|                                      |   |
|--------------------------------------|---|
| I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 | 3 |
|--------------------------------------|---|

|                                       |   |
|---------------------------------------|---|
| II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보고 ..... | 9 |
|---------------------------------------|---|

|                                        |     |
|----------------------------------------|-----|
| III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결과 ..... | 103 |
|----------------------------------------|-----|



# I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 1. 추진방향

- 충청남도 지역현안 및 갈등현안의 실태파악
- 공공갈등의 실태파악 후 유형분류를 통한 사례 분석
- 대안적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 방안 도출
-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합의기반→책임공유→역할분담의 체제 형성 및 정보공유
-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과 현재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군의 자기주도적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마련 방안 연구
- 연구회 구성원 상호간 연구,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통한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및 활동가를 활용한 연구회 운영 활성화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회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8개월)
- 사업내용
  - 공공갈등 유형 및 실태 분석 등 전문가 참여 과제 수행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방문 활동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비 : 5,000천원

### **3. 세부 사업계획**

####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 및 모임 활동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모임
- 사업비 : 1,000천원

#### **2) 충청남도 공공갈등 실태조사 및 유형분류**

- 사업개요 : 공공갈등 실태·잠재요인 조사, 유형분류
- 사업내용 : 전문가 활용 연구 수행(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비 : 1,000천원

#### **3)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 사업개요 : 공공갈등 현장 방문 및 워크숍 개최
- 사업내용 : 유형별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워크숍 개최비 등
- 사업비 : 2,000천원

#### **4) 발간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연1회)
- 사업비 : 1,000천원

## 5. 사업 추진일정

- 2015. 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 2015. 4 : 연구회 발족식 및 정기모임 개최
- 2015. 5~8 : 공공갈등 유형 및 실태 조사, 현장방문
- 2015. 9 : 현장방문 결과 토대로 워크숍 개최
- 2015. 10 : 정기모임 및 간담회 개최
- 2015. 11 : 보고서 발간·배포

## 6. 기대효과

- 道 관계관, 전문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道の회 역량강화 성과 창출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실태조사 및 분류를 통한 갈등유발 요인 파악, 확인을 통한 갈등의 전개상황 분석 및 예측으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원칙 확립 도모
- 공공갈등의 구조적, 행위적, 환경적 변화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주도의 제도 확립을 위한 현장관리기법의 도출

## 7.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 구분         | 소요액<br>(천원) | 산 출 기 초                                            |
|------------|-------------|----------------------------------------------------|
| 계          | 5,000       |                                                    |
| 연구모임 활동비   | 1,000       |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br>- 250,000원×4회 = 1,000,000원      |
| 현황조사 및 분석  | 1,000       | ○ 자료조사 및 분석<br>- 1,000,000원×1회 = 1,000,000원        |
| 현장방문 및 워크숍 | 2,000       | ○ 현장방문 및 워크숍<br>- 500,000원×4회 = 2,000,000원         |
| 보고서 인쇄     | 1,000       |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br>- 100,000원×1회 = 1,000,000원 |



##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입 명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윤지상
3. 연구목적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략 및 계획수립
4. 구 성 원 : 10명

| 구 분 | 성 명 |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 서명날인                                                                                  | 비 고 |
|-----|-----|--------------|---------------------------------------------------------------------------------------|-----|
| 대 표 | 윤지상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     |
| 간 사 | 장창석 | 충남발전연구원      |    |     |
| 회 원 |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 고승희                                                                                   |     |
|     | 안용주 | 선문대학교 교수     |  |     |
|     | 이주호 | 선문대학교 교수     |  |     |
|     | 이광원 | 선문대학교 전임연구원  | 이광원                                                                                   |     |
|     | 이용호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     |
|     | 유병국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     |
|     | 김명선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     |
|     | 오인철 |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  |     |

※ 붙 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5년 3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윤 지 상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 연구활동계획서

|                        |       |                                          |
|------------------------|-------|------------------------------------------|
| 연구모임명                  |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 대 표 자                  |       | 윤 지 상 의원                                 |
| 연 구<br>내 용             | 과 제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                |
|                        | 목 적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유형 및 실태분석을 통한 공공갈등 대응방안 수립 지원 |
| 연구활동기간                 |       | 2015. 3 ~ 2015. 11(9개월)                  |
| 연구방법·연구활동<br>내용 및 세부계획 |       | 「붙 임」                                    |
| 연 구<br>활동비             | 소 요 액 | 5,000천원                                  |
|                        | 산출내역  | 「붙 임」                                    |
| 기타사항                   |       |                                          |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3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윤 지 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 Ⅱ.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보고



# 1.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 1) 연구회 등록

- 2015년 3월 4일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2015년 11월까지 활동을 전개함

## 2) 연구회 사업계획

- 공공갈등 유형 및 실태 분석 등 전문가 참여 과제 수행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방문 활동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 일 시 : 2015. 4. 30(목) 16:00
- 장 소 : 충청남도 의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2명, 관계자 2명)
- 안 건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상견례 및 구성 안내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검토 및 추진방안 협의
- 회의결과
  - 1)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창립총회 개최
    - 연구모임을 통해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실태 파악을 통한 잠재요인을 유형분류가 필요함을 공감
    -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의회, 충청남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 2)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협의 결과

-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적 이해 필요
-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파악 필요
- 공공갈등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모임 사업추진 제의
-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활동 필요

### 3) 종합평가

- 의원연구모임 창립모임 개최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현장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또한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실태조사 및 분류를 통한 갈등유발 요인 파악, 확인을 통한 갈등의 전개상황 분석 및 예측으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원칙 확립이 필요함을 통감함
- 아울러, 연구모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피드백함으로써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기로 하는 등 의원연구모임 운영의 기반 마련

##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현황

| 연번 | 내 용                        | 갈등주체                           | 갈등유형             | 발생      |
|----|----------------------------|--------------------------------|------------------|---------|
| 1  | KTX 천안·아산역사<br>택시사업 구역 관련  | 천안시↔아산시                        | 교통관련             | ’03.10. |
| 2  | 보령~서천간 부사간척지<br>경계설정 관련    | 보령시↔서천군                        | 지방행정             | ’08. 3. |
| 3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br>건설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br>해양수산부↔서산시,태안군 | 수자원 개발.<br>이용.보전 | ’06.12. |
| 4  | 금강하구둑 기수역<br>복원 관련         | 서천군↔군산시                        | 수자원 개발.<br>이용.보전 | ’09. 1. |
| 5  | 공주 목방산 채석단지<br>승인 관련       | 산림청↔공주시 주민                     | 비선호시설            | ’09. 7. |
| 6  | 동부석탄화력발전소<br>건설계획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당진시<br>주민              | 비선호시설            | ’10. 1. |
| 7  | 서천~군산<br>공동조업구역 관련         | 서천군↔군산시                        | 수자원 개발.<br>이용.보전 | ’10.12. |
| 8  | 군산 LNG발전소의<br>어업인 피해 보상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br>(한국서부발전)↔서천군<br>주민  | 수자원 개발.<br>이용.보전 | ’10.12. |
| 9  | 당진 황해자유구역<br>지구 조정 관련      | 도↔당진시 주민                       | 지역개발             | ’11. 7. |
| 10 | 청양 폐기물 매립장<br>설치 관련        | 청양군 ↔ 지역주민                     | 비선호시설            | ’14. 7. |
| 11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br>시설 설치 관련    | 도 ↔ 내포주민                       | 생활환경             | ’14. 2. |
| 12 | 보령 공군사격장<br>환경피해           | 국방부 ↔ 보령주민                     | 생활환경             | ’08. 6. |

### 3. 2차 의정연구모임 개최

- 일 시 : 2015. 6. 16.(화) 10:30 ~ 12:00
- 장 소 : 충청남도 의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3명, 관계자 3명)
- 회의결과
  - 1) 공공갈등의 이해와 토의
    - 민원, 분쟁, 갈등 등 비슷한 개념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
    -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와 변화 토론
    -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 충청남도 공공갈등 잠재요인 분석
    - 충청남도 공공갈등 잠재요인 파악
    - 지역별, 유형별 분석을 통한 공공갈등의 우선과제 선정
  - 3) 의원연구모임 활동방향 토의
    - 지역 내 공공갈등 중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선정
    - 도내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협의

## **1. 공공갈등 개요**

### **1) 공공갈등이란**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각종 사업 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개되는 갈등

### **2) 갈등 발생주요 원인**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님비(NIMBY), 핼피(PIMFY)현상 심화
  -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된 반면, 책임과 능력은 미흡
- 주민과 정부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미흡
  -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하향식(top-down) 정책 결정과정 답습
  - 국가(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의 인식론적 의사소통 미흡

### **3)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갈등 확산
  - 경제개발 속에서 이념이나 노동문제 등 계층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간 갈등 증가
  -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 기업유치,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증가
- 2000년대부터는 갈등의 대상 확대 및 다양화
  -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보다는 환경, 복지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갈등이 확산·증가

## 4) 관리 필요성

### ○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끊임 없이 분출 됨
- 공공갈등은 이해갈등 뿐만 아니라 이념적·종교적·문화적 차원의 가치를 반영한 복합갈등,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신뢰갈등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또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적·사법적 해결방식으로는 갈등해결의 한계에 이르고 있음

### ○ 갈등발생 증가에 따라 체계적 대응 요구

-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시민 참여·권리의식 향상으로 각종 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발생 증가 추세임
- 공공갈등은 지역간의 비선호시설의 입지,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지역간의 분열을 초래 할 우려가 크므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능률편향적인 정책과정을 시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즉 갈등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필요함
- 사후적 갈등해결 → 사전적 갈등예방, 정책추진 결과의 중요성 → 정책추진 과정의 중요성, 행정 및 정책 효율성 → 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 사법적 판결 → 당사자 간 협상으로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제도적 시스템 필요

- 복합화된 갈등의 원인은 갈등의 주체인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에서 비롯됨
- 효과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달성이 필요함
- 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토대로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관리·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공공갈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과도한 비용 지출은 물론 행정 신뢰성 결여로 지역주민 불신 초래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요구됨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갈등 해소 역량이 미흡하여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갈등전문 인력 지원이 절실함

○ 갈등 사안이 광역화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갈등의 양상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현상으로 표출됨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간의 경쟁구도는 물론 지역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증가로 지역간의 분열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컨트롤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

## 2. 국내 갈등관리 추세

-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
  - 정책의 입안부터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 도모
- 2007.11.23. 충청북도에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각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
- 現 8개 시·도에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 4개 시·도에 위원회 구성
-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여 사업·정책추진에 따른 갈등예방, 조정 등 갈등관리
  - 現 2개팀 9명으로 구성, 2014년 예산액 6개 사업에 261백만원
- 2015년부터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인천시 민원소통담당관내 갈등관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이행

## 3.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 2006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창립
  - 4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 서해안권)포럼 운영
- 2010. 11월 갈등관리조례를 제정 공포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갈등관리 담당관 토론회 등을 통한 도-시·군간 네트워크 형성
  - 2014. 12월 갈등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 2015년 1월 갈등관리팀을 신설
  - 1팀 4명(5급 1, 6급 2, 9급 1)

## 4.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 1) 도의 역할과 기능

####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 주요 갈등현안 선정 및 갈등현황 관리
- 갈등진단 및 영향분석을 통한 갈등 대응 지원
- 갈등현안 정보 및 갈등 해결 사례 매뉴얼 작성등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이후까지 정책추진의 전 단계에 걸친 상시적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
-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략적 대응 추진

####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한 갈등관리

-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들의 참여 유도 하여 갈등관리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구현
- 협의회운영,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규제협상, 시나리오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적용 검토

#### ○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 현재 조례에 의해 ‘갈등관리포럼’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포럼을 통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부분 전문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의 갈등해결역량 강화 및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조정과 중재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해결에 효과적임
- 공공갈등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 해결능력 배양 전문교육 실시

- 갈등관리 전문 인력 및 기구는 단시일 내에 갖추어 지지 않으므로 충남형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갈등의 양상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현상으로 표출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 이에 갈등관리를 위한 道·시·군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시

## 2) 시·군의 역할과 기능

### ○ 시·군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각 시·군별 공공갈등현안 정보공유 및 기초자료 작성, 사례 공유 필요
- 각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결정자인 시·군은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로써 갈등전담팀 도입, 갈등관련 예산운영, 갈등영향분석 활용 등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운영

### ○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예방 및 관리

- 새로운 협력 행태인 거버넌스를 통하여 갈등사안에 따라 시민사회 참여중심의 협의의 거버넌스와 기업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거버넌스 유연적 적용 필요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방적 정보제공에서 쌍방향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3) 필요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군참여 및 공감대 형성
- 협업내용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 갈등해결 기구 및 네트워크 등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갈등 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 및 지원방안 전개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 갈등관리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방안 수립
-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 효율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의식 제고
- 갈등관리 의식 개혁을 위한 민·관 교육 방안 마련
- 갈등 해결 사례 등을 통한 갈등관리 홍보 방안 마련

#### **4)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공공갈등의 대응을 통한 사전예방
-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역량 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 갈등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
-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로 도민 체감형 참여자치 확산

# 충남도 현존갈등 및 잠재갈등 현황

## ○ 천안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4. 1, KTX 천안아산역 개통과 더불어 택시사업구역 지정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TX천안아산역 사업구역 관련 천안/아산시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li> <li>[천안] 천안아산역 부근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요구</li> <li>[아산] 공동사업구역 지정 반대 또는 천안 시내권까지 공동 영업 구역으로 지정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4. 1 역사개통 이후 양시 택시업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집회(7회), 중앙·道 조정회(26회)</li> </ul> </li> <li>국토부(대중교통과) 실태 점검('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0.11)</li> <li>조정협의회 구성('10.11/ 10명/ 관련기관 및 업체)/운영(20회)</li> </ul> </li> <li>공청회('12.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용역(안)천안시 반발로 진행 중단</li> </ul> </li> <li>천안 택시업계 집회('12.6.4/ 2,7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면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체제로 운영 중으로 향후 사업구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등 진행 일정 없음</li> </ul>                                     |
| ❷ 천안문화재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선6기 인수위원회의 천안문화재단 해산 권고에 따른 정책갈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인수위원회의 천안문화재단 해산 권고에 따라 관계자 및 지역문화예술계, 천안시간 정책갈등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7월 인수위 발표를 둘러싼 갈등 확산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 결정</li> <li>'14. 8월 천안NGO센터 주관 <b>“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자 등 75명 심층면담 및 그룹 미팅</li> <li>조사결과 제출</li> </ul> </li> <li>'14. 9월 기능쇄신을 통한 존속 결정 발표</li> <li>'14. 11월 ~ 현재 재단 기능쇄신을 위한 <b>“정책대화(Policy Dialogue)”</b> 진행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3월 정책대화 종료 및 기능쇄신안 제출</li> <li>'15. 3월 문화재단 쇄신안에 대한 정책결정 및 재단 이사회 의결,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li> </ul> |

## ○ 공주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천태산 석산 개발 반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 천태산 토석 채취</li> <li>위치 : 공주시의당면 덕학리</li> <li>갈등개요 :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li> <li>비선회시설/심화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오염, 교통불편, 자연경관 훼손, 주민갈등유발 등의 이유로 천태산 토석채취허가 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03~10월 : 진정서 접수</li> <li>'14.12.23 :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 접수</li> <li>'14.12.29 :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 의견수렴</li> <li>'15.01.16 :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서접수 (석산개발반대대책 위원장 박한규)</li> <li>'15.01.20 :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li> <li>'15.01.23 :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2015.03.20.한)</li> <li>'15.01.3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li> <li>'15.02.03 : 주민 의견서 접수 (천태산 토석채취허가 반대대책 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한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의견과 실과의견을 종합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li> </ul>                                                                                                                                                                                                                                                                                 |
| ❷ 노인복지 시설건축 관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 요양원설치</li> <li>위치 : 공주시 옥룡동 108-3</li> <li>갈등개요 : 요양원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우려</li> <li>비선회시설 /심화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룡 덕성그린타운아파트 주민 들로부터 아파트와 인접, 노인 복지시설(요양원)이 들어올 경우 아파트 값 하락 등 재산 권과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사고위험 및 소음과 환경오염 등 피해가 우려 된다는 주장(아파트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는 노인복지시설 건축 허가 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9.17 : 건축허가 접수</li> <li>'14.10.16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11. 17까지)</li> <li>진입로 폭 4m이상 확보,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조사 후 결과 제출등</li> <li>'14.9.29 ~ 11.20 : 시장님 면담(1회), 국장 면담(1회), 주민대표 허가과 방문(2회), 집회신고(2차) 및 시청정문 앞 집회(13회), 다수 진정민원 회신(2회)</li> <li>'15.4.30 : 2차례 까지 보완연기 신청서 수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계획(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건축주로부터 보완에 따른 연기신청을 '15. 4. 30 까지 요구한 상태</li> <li>진입로 확보에 따른 시설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 변경 필요</li> <li>최종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후 관련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계획</li> </ul> </li> <li>갈등조정 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주에게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후 추진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li> </ul> </li> </ul> |

## ○ 보령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보령~서천 간<br>부사 간척지 경계<br>결정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 1,191ha</li> <li>사업비 : 184,602백만원</li> <li>사업기간 : 1985년 ~ 2008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경계갈등 (보령↔서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결 (서천군안 수용)<br/>⇒ 대법원 재소(보령시, 서천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판결 후 계구역 조정, 지역 주민들 간 내적 갈등 상승 예상</li> </ul> |
| ❷ 보령 공군사격장<br>환경피해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령시 신흑동 갯배마을 일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부대↔지역주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포럼 개최 등 해결노력</li> <li>역학조사, 건강조사 등 지속적인 원인규명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부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추진을 통한 갈등 해소 추진</li> </ul>        |
| ❸ 마권 장외발매소<br>유치권관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유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찬성VS유치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령시 ⇒ 유치신청</li> <li>한국마사회 ⇒ 승인 검토 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외 발매소 유치시 시민단체, 학생 등 대규모 집회 예상</li> </ul>       |

## ○ 아산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당진평택항매립지<br>경계분쟁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산만 일원 공유수면 매립 방식에 의한 당진평택항 조성 (사업주체 : 평택지방해양수산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충남도(아산시, 당진시)와 경기도(평택시)간 행정경계 분쟁 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 계류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중 직권조정 예정</li> </ul> |

## ○ 논산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지역단위 통합<br>관리센터(바이오<br>가스화) 시범 사업<br>추진관련 분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929번지외 7필지</li> <li>규모 : 130톤/일(가축분뇨 100톤, 음식물폐기물 30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은 현재 축협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시설 악취를 완벽하게 차단한 후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 12월 :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완료</li> <li>2015. 1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승인(충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로서는 원만한 해결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li> </ul> |

## ○ 서산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①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업비 : 1조22억원)</li> <li>◦ 방식 : 가로림만 입구에 2,053m의 제방 축조, 발전기 설치</li> <li>◦ 용량 : 520MW(26MW×20기)</li> <li>◦ 내용 : 발전소, 제방, 해양레포츠 산업단지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간 찬성 및 반대 등 이해 갈등 양상</li> <li>①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 에너지(전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차원 건설 추진</li> <li>② 서산시 : 생태환경 피해 및 어민 생계·터전 상실 발전소 건설 부정적</li> <li>③ 태안군 : 상대적 지역개발 기대 심리가 커 발전소 건설에 긍정적</li> <li>④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투쟁위원회(반대) :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의식 팽배, 어민피해에 따른 생계·터전 상실 우려 등 전면 백지화 요구</li> <li>- 보상대책위원회(찬성) : 어족 자원 고갈로 어업활동 불가,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관광 어촌 기대, 조속한 건립 희망</li> </ul> </li> <li>⑤ 가로림조력발전(주) : 국가 에너지(전력) 확보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차원 건설희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9. : 가로림조력발전(주) 법인 설립</li> <li>◦ '07. 9.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환경부→서부발전)</li> <li>◦ '10. 3. : 발전사업 허가(산업자원부, 103차 전기위원회)</li> <li>◦ '12. 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환경부→지경부)</li> <li>◦ '14.10. 6.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산업부)</li> <li>◦ '14.10. 6.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산업부)</li> <li>◦ '14.12. : 가로림만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승인(산업통상자원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따라 찬반 의견 대립은 소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찬반주민 간 비방과 배척 등 지역갈등은 계속되고 있음</li> </ul> </li> <li>◦ 사업자 측에서는 찬성주민들이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떤 결정도 못하는 실정</li> <li>◦ 가로림만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사업재개 가능성이 열려있어 향후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 남아 있음</li> </ul> |

## ○ 계룡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금(합의)갈등                 | ◦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 ◦ 1993년부터(20여년) “도시개발 행위” 제한으로 주거의 신축·보수 등 제한이 있었으며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완화로, 그 간 제한된 해당지구 주민들은 본 개발사업을 계기로 정당한 보상요구(65세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03. 타당성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li> <li>◦ 2012. 10.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행안부)</li> <li>◦ 2013. 07.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li> <li>◦ 2014. 12.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승인(道)</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단계별 보상과정에서 주민과 보상관련 갈등예상</li> <li>※ 시에서는 보상결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용방침</li> </ul>                          |
| ❷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혜택 주민과 비혜택 주민간의 형평성논란 갈등 (완료) | ◦ 시골마을풍경스케치사업 (벽화사업) | ◦ 계룡시 읍사면 엄사리 나분들 일원(광석1리) 공사착공 사전 절차인 사유재산(벽, 대문 등) 사용승락서(주민동의서)징수 과정에서, 한정된 사업비265백만원[도비(50%)시비(50%)]로 인하여 사업혜택 주민과 비혜택 주민 간 사업량 확정 협의 지연(주민간 반목과 갈등)으로 공사중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3. 道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li> <li>◦ 2012. 9. 계약(265백만원) 및 착공계 제출(협상계약)</li> <li>◦ 2013. 5. 주민과 협상 지연으로 공사 중지</li> <li>※ 사업내용 및 사업량 확정 협의지연</li> <li>◦ 2014. 3. 공사 재착공계 제출 (사업재착공)</li> <li>※ 사업내용 및 사업량 확정 주민합의</li> <li>◦ 2014. 8. 사업완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총7회) 등을 통해 상기 사업 목적과 취지가 주민 개인혜택을 위함이 아닌 마을주민 전체적 관점에서 농촌환경개선 사업임을 지속적 설득 하여 사업완료.</li> </ul> |

## ○ 당진시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9월 현재판결로 당진시에 귀속된 공유수면매립지를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2009.4.1.)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에 따른 관할권 분쟁</li> </ul> | <p>&lt; 당진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2004년)으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진시 토지 등록행위는 정당</li> </ul> <p>&lt; 평택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장관의 결정을 받지 않고 당진시에서 등록한 토지는 위법, 평택시 관할로 결정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02.24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체[당진·평택·아산시 의견청취]</li> <li>2014.04.04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차 현장방문[기업체 의견청취(3개)]</li> <li>2014.07.03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차 현장방문[실무부서장 의견청취]</li> <li>2015.01.20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개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3월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li> <li>관할권 변경 결정시 대법원 소송 등 법적 대응</li> </ul>                                                       |
| ② 군부대 이전 사업에 관한 갈등(예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및 원인 : 00대대 이전사업추진</li> <li>※ 관계법령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li> <li>진행단계 : 시기 미도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전으로 주민에 고시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전 후보지 발표 시 지역주민 집단민원 예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01. 20. : 합의각서 국방시설 본부에 제출</li> <li>'15. 03월 중 : 합의각서 체결 및 국방부 고시 예정</li> <li>'15.~'16 : 대체시설(이전예정지) 토지보상</li> <li>'15.~'18 : 대체시설 조성(군부대 이전예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 후보지 발표시 예정지 지역 주민 및 토지주 이전 반대 집단 민원 발생 예상</li> <li>지역주민 숙원사업 요구사항 반영 등 필요</li> <li>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 취득</li> </ul> |

|                                   |                                                                                                                                                                                                                                                                                          |                                                                                                                                                                                                                                                                                                                                          |                                                                                                                                                                                                                                                                                                                                                                                                                                                                         |                                                                                                                                                      |
|-----------------------------------|------------------------------------------------------------------------------------------------------------------------------------------------------------------------------------------------------------------------------------------------------------------------------------------|------------------------------------------------------------------------------------------------------------------------------------------------------------------------------------------------------------------------------------------------------------------------------------------------------------------------------------------|-------------------------------------------------------------------------------------------------------------------------------------------------------------------------------------------------------------------------------------------------------------------------------------------------------------------------------------------------------------------------------------------------------------------------------------------------------------------------|------------------------------------------------------------------------------------------------------------------------------------------------------|
| <p>③ 345kV북당진 ~ 신탕정 송전선로 건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 : 신설 345KV 북당진 ~ 기설 345KV 신탕정</li> <li>- 당진구간: 16km 39기(송악15, 신평18, 우강6)</li> <li>- 아산구간 19.5km 48기</li> <li>※ 송악15기, 신평18기, 우강6기 [지중화 구간 : 3.5km, 철탑 8기철거]</li> <li>◦ 준공시기</li> <li>- 육지 : 2015. 12.</li> <li>- 지중 : 2019. 1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력은 태안화력 9·10호기, GSEPS 발전소 추가증설에 따른 송전선로를 북당진 (송악, 신평, 우강) ~ 신탕정 건설 계획</li> </ul> <p>〈 대책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선로 설치 불가하며 국도 38호선 이용 지중화 요구(12km)</li> </ul> <p>〈 한국전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수면과 38국도를 이용한 지중화 6km 외 수용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04 :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접수</li> <li>◦ '12.7~'13.1 : 해상선로 추진 협의 (국회, 당진시, 향만청, 한전, 금강청)</li> <li>◦ '13.6.20 : 한전 입장 선회[해월 → 육지선로 및 일부 3.5km 지중화]</li> <li>◦ '14.2.9 지중화 구간 연장요구 : 신평 5.5km, 송악 2km</li> <li>◦ '14.5.27 :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 신청(한전 → 산자부)</li> <li>◦ '14.8.12 :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 제시(시→ 산자부)</li> <li>◦ '14.11.12 ~ : 지중화 검증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회의 진행(8회)</li> <li>- '15.1 공유수면과 38국도를 이용한 노선 및 지중화 6km 제시(한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수면과 38국도를 이용한 노선 결정 및 지중화 구간 확정을 위한 협의</li> <li>◦ 송주법에 의한 지원사업과 한전 특별지원사업을 어촌계에 일부 지원 하는 방안 협의</li> </ul> |
| <p>④ 345kV 당진화력 ~ 북당진 송전선로 건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 : 선로길이33km(예상)</li> <li>◦ 준공시기 : 2021. 6월</li> <li>◦ 사업지역 : 당진시(석문, 고대, 송산, 송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 765kV 인출 송전선로 고장대비 및 당진화력 및 당진 에코파워 발전력 안정적 수송을 목적으로 345kV 당진화력 ~ 북당진송전선로 건설 추진</li> <li>◦ 대책위 : 765kV 송전선으로 당진화력과 당진에코파워 전력을 수송할 수 있으므로 예비선로 건설은 절대 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6월 사업착수(임지선정용역 착수, 기초자료 수집 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과 대책위 간 첨예하게 대립 될 것으로 예상되며 765kV 송전선로로 송전 가능함으로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함</li> </ul>                                   |

|                                               |                                                                                                                                                                                                                                                 |                                                                                                                                                                                                                                                                                                                     |                                                                                                                                                                                                                                                                                                                                                                                     |                                                                                                                                                                                                      |
|-----------------------------------------------|-------------------------------------------------------------------------------------------------------------------------------------------------------------------------------------------------------------------------------------------------|---------------------------------------------------------------------------------------------------------------------------------------------------------------------------------------------------------------------------------------------------------------------------------------------------------------------|-------------------------------------------------------------------------------------------------------------------------------------------------------------------------------------------------------------------------------------------------------------------------------------------------------------------------------------------------------------------------------------|------------------------------------------------------------------------------------------------------------------------------------------------------------------------------------------------------|
| <p>⑤ 석문국가산업지<br/>에코타운(소각매립)<br/>조성에 관한 갈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석문면 삼봉리 석문국가<br/>산업단지 내</li> <li>◦ 면적 : 185,783㎡<br/>(매립시설 - 면적 : 131,200㎡,<br/>용량 1,850천㎡)<br/>(소각시설 - 면적 : 10,000㎡,<br/>용량94톤/일 ×2기)</li> <li>◦ 승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br/>사업시행자 : 대일개발(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과<br/>폐기물이 전국에서 반입되는<br/>사황을 우려</li> <li>◦ 시설에 대한 우려와 매립시설의<br/>침출수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시<br/>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함<br/>(공청회시)</li> <li>◦ 환경단체 및 영향지역 주민<br/>(송산면)은 소각시설이「폐기물<br/>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br/>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상<br/>필수시설에서 제외되었으므로<br/>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br/>입장을 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08.26 : 환경영향평가서<br/>(초안) 접수</li> <li>◦ 2014.10.08. : 환경영향평가(초안)<br/>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br/>- 2014.11.04. 공청회 요구로 무산</li> <li>◦ 2014.11.17 : 주민의견 제출서 접수<br/>➡ 사업자의 추가설명 필요(일방적인<br/>사업자의 주민설명회 보다는<br/>공청회를 요청</li> <li>◦ 2014.12.3 : 공청회 개최<br/>➡ 영향지역 주민 및 사업체에서<br/>소각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br/>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br/>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권자가(금강유역환경청) 환경<br/>영향평가를 진행중임</li> <li>◦ 우리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br/>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br/>지자체 의견 제출의 권한이<br/>없으며, 사업주와의 이해 견해<br/>차이로 갈등 발생시 중재가<br/>어려움</li> </ul> |
|-----------------------------------------------|-------------------------------------------------------------------------------------------------------------------------------------------------------------------------------------------------------------------------------------------------|---------------------------------------------------------------------------------------------------------------------------------------------------------------------------------------------------------------------------------------------------------------------------------------------------------------------|-------------------------------------------------------------------------------------------------------------------------------------------------------------------------------------------------------------------------------------------------------------------------------------------------------------------------------------------------------------------------------------|------------------------------------------------------------------------------------------------------------------------------------------------------------------------------------------------------|

## ○ 금산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갈등 | ◦ 금산군 대전 편입에 대한 주민간 찬반       | ◦ 금산군 대전 편입에 대한 행정 구역변경추진위(찬성)와 통합 반대추진위(반대)간 의견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 12. 18. 행정구역변경 금산군민 입장에 따른 건의문 채택 (군의회 만장일치 찬성) 행정자치부장관에 건의</li> <li>◦ 건의문 채택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고조되는듯 하였으나, 현재 군민들 동요가 없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이 없자 군의회 의결자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li> <li>※ 2015. 1월 행정구역변경 추진 사무실 폐쇄</li> </ul>                                                                                     | ◦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행정구역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활동 중단으로 갈등해소 전망 |
| ❷ 우리나라 채광인가 갈등   | ◦ 채광 불인가처분에 따른 광업업자와 주민 간 갈등 | ◦ 청정지역 금산 이미지 실추 및 군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다는 군민의견(반대)과 에너지 개발의 이로움을 주장(찬성)하는 광업업자 와의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3. 31 : 채광인가신청</li> <li>◦ 2010. 3. 3 채광 불인가처분 (충청남도)</li> <li>◦ 2010. 5. 31 행정심판청구 (광업권자→지경부)</li> <li>◦ 2011. 9. 2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지경부)</li> <li>◦ 2011. 11. 30 행정소송제기 (광업권자)</li> <li>◦ 2013. 11. 27 행정소송 패소 2심 항소제기</li> <li>◦ 2014. 10. 30 항소심 패소</li> <li>◦ 2014. 11. 14 대법원 상고</li> </ul> | ◦ 행정심판 기각 및 행정소송 패소로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 ○ 부여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은산면 대양리<br>폐기물매립장<br>설치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부여군 은산면</li> <li>- 면적 : 421,206㎡(127,638평)</li> <li>◦ 사업자 : (주)한맥</li> <li>- 운영기간 : 30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물장 설치진행</li> <li>◦ 주민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절대 반대 입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 토지매입 등 절차 이행, 업무방해로 주민고소(고발)</li> <li>◦ 주민 : 사업반대 입장 고수 및 반대시위</li> <li>◦ 부여군 : 3차례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청 반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 사업진행</li> <li>-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제기 가능성</li> <li>◦ 주민 : 절대반대</li> </ul> |
| ❷ KTX공주역사내<br>택시 공동 사업<br>구역 설치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공주 이인면</li> <li>◦ 기간 : 09.9~05.3</li> <li>◦ 개통 : 2015.4월초</li> <li>◦ 주변 지자체 : 부여, 논산, 계룡, 청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운송영업권판단</li> <li>- 공주시: 단일 사업구역</li> <li>- 부여군: 공동사업구역 (인근 시군 공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조정 건의</li> <li>- 2014. 1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li> <li>◦ 실무협의(3차례)</li> <li>- 사업구역 통합에 반대 및 부정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시 택사업계 반대 입장 고수 예상</li> <li>◦ 충남도에서 적극 적인 자세로 설득 및 중재</li> </ul>      |

## ○ 서천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① 보령-서천간 부사<br>간척지 경계설정<br>관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사공구 간척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수면이 담수호 및 하천과<br/>농경지 등으로 조성</li> </ul> </li> <li>※ 농경지 : 653ha(서천군<br/>416ha, 보령시 237ha)</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보령 간 불합리한 관할구역<br/>변경에 대한 의견 대립</li> <li>서천군은 새로 만들어진 하천을<br/>기준으로 행정구역 변경</li> <li>보령시는 기존경계를 중심으로<br/>면적이 비슷한 정도로 경계 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10 :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서천군<br/>의회 의견서 제출(도)</li> <li>'12.5: 행정구역 결정 신청(행자부)</li> <li>'13.7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li> <li>'14.7: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결정(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안으로 하천중앙으로 경계 의결</li> <li>보령시의 부사매립지 관리비용 중 일정액<br/>서천군 균등 상환 이행명령</li> </ul> </li> <li>'14.8:서천군 대법원 소 제기(관리비용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령시 대법원 소 제기(귀속결정 취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li> </ul>                                                                         |
| ② 금강하구둑 기수역<br>복원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강하구둑 준공('90년) 이후<br/>수질 악화, 토사퇴적, 연안<br/>어장 황폐화 및 장항항 역할<br/>무실 등 문제점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강 사업에 금강하구둑 기수역<br/>복원을 서천군 에서 제기하면서<br/>군산시(전북)와의 분쟁 발생</li> <li>서천군 : 금강하구둑 해수유통<br/>으로 기수역 복원 주장</li> <li>군산시 : 대체용수 공급 대안이<br/>없어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4: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br/>구축 연구용역(국토해양부)</li> <li>'13:충남도 금강비전 실행계획수립(금강<br/>하구둑 구조개선사업 포함)</li> <li>'13.8:부분해수유통시 염분확산 수치모델링<br/>용역추진(서천군)</li> <li>'13.8:해수유통결의문 채택(충남시장군수<br/>협의회)</li> <li>'13.10:금강 해수유통 반대결의안 채택<br/>(전북도의회)</li> <li>'13.11:충남도민 15만명 금강 해수유통<br/>촉구 서명</li> <li>'14.7:충남도 금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추진</li> <li>'14.12: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br/>(해수부)</li> <li>'15.2:군산시와의 행정협 의회 재개를<br/>통한 협력체계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도 및 중앙부처와<br/>연계 금강하구 문제<br/>해결 노력</li> <li>군산시와의 협력네트워크<br/>구축을 통한 대승적<br/>발전방향 모색</li> </ul> |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③ 군산LNG 복합 화력 발전소 어업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가동(700MW급 1기)</li> <li>- 온수 및 화학물질 배출로 해수 온도 상승, 해양환경에 영향</li> <li>- 서천군 김양식 등 어업피해 예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 해역의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주민의견 수렴 누락</li> <li>- 냉각방식(폐회로식)시스템으로 개선 및 어업인의 의견 수렴</li> <li>- 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조사 실시 및 어업피해 보상 요구</li> <li>◦ 한국서부발전</li> <li>- 어업인의 각종 요구사항 부분 수용 검토</li> <li>-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하되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배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2 : 발전소 건설반대 집회</li> <li>◦ '10.12 : 어업손실조사, 취배수구 공개요구 집회</li> <li>◦ '12.12 : 당사자간 협상 추진(일부 합의)</li> <li>◦ '13.5 : 사후 환경영향조사 조사지점 협의</li> <li>- 이후 어선을 포함한 어업피해조사 요구에 용역 진행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측에서 상호 합의를 통한 환경영향조사 추진 제안</li> <li>◦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어업인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갈등 해소 전망</li> </ul>                           |
| ④ 서천-군산간 공동 조업구역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조선 총독부/1914. 3. 1), 현 해상경계설정</li> <li>◦ 서천군 관내 해역이 전북도에 편중, 조업구역 협소로 어업인 소득 저하는 물론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수산업법 위반 단속으로 어업인 범법자 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경계 불합리로 어업인 조업 구역 협소 도 및 업종간 갈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2: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농림부)</li> <li>◦ '11.4:공동조업수역 설정 건의(국민권익위)</li> <li>◦ '12.10:해상경계 갈등 조정 T/F팀 협의회(농림부)</li> <li>◦ '12.12:불합리한 해상경계 설정에 따른 법적대응 소송선임</li> <li>◦ '13.4: 불합리한 해상경계 설정에 따른 법적대응 소송</li> <li>◦ '13.11:형사소송 선고, 위헌법률 신청건 심리</li> <li>- 선고결과 불복 항소</li> <li>◦ '13.12:헌법소원(현재)</li> <li>◦ '14.12: 수산업법 위반 형사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li> <li>◦ '15:헌법소원 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소원 진행중이나 공동 조업구역 지정 어려움 판단, 대응책 마련 추진</li> <li>- 중앙정부에 공동조업구역 지정 법제화 요구</li> <li>-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 대응 요구</li> </ul> |

## ○ 청양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청양 폐기물매립장<br>설치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 호 : (주)양지</li> <li>- 대표자 : 박찬석</li> <li>- 신청지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산8-1, 일원</li> <li>업 중 : 폐기물최종 처분업 (사업장일반 폐기물매립장)</li> <li>면 적 : 34,500㎡</li> <li>용 량 : 1,056,196㎥</li> <li>사용기간 : 5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 최종처리업 설치 반대</li> <li>기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소송진행중)</li> <li>건설폐기물 허가 취소건은 충남도 특별위원회 활동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갈등 양상 변화</li> <li>기존의 건폐업 허가 취소는 도별도위원회에서법률검토 중</li> </ul> |

## ○ 홍성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장항선 개량 2단계<br>건설 사업 관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 장항선 2단계 건설 사업</li> <li>위 치: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 은하면 중리</li> <li>사업비 : 9,499억원</li> <li>사업량 : 11.5km</li> <li>※ 총연장 = 32.4km</li> <li>-신성~주포 18.0km</li> <li>-남포~간치14.4km</li> <li>사업기간 : 2010 ~ 2016년</li> <li>사업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년 기본계획 노선과 광천역사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 집단민원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 심화 상태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항선 철도가 경유 하는 지역 주민 간 입장차가 매우 큰 실정으로 협의의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li> </ul> |

## ○ 예산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시 악취 발생, 지하수오염 우려등으로 지역주민의 입주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소송중(1심 원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2심 진행 중</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청은 지역주민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패소할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발생 예상</li> </ul>        |
| ❷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두비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주민 생활불편 민원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처리업체인 (주)두비원에서 공정 중 악취발생에 따른 생활 불편 민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청에서 (주)두비원 방문(2년간) 악취저감시설 추가설치 및 생산 공정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취발생 공정 개선하여 악취가 저감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나 공정의 특성상 악취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li> </ul> |
| ❸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관련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가칭) 서부내륙고속도로</li> <li>- 위치:평택-익산간</li> <li>- 사업비: 2조 7,000억원</li> <li>- 사업기간: : 2018~2022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안을 놓고 민-민 간 갈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사업 제안업체인 포스코 건설에서 지역노선을 고려한 노선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결과 및 검토 내용 제시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노선이 결정되어 공사 시행에 들어가야 하나 지역민간 이견이 있어 갈등 상존</li> </ul>   |

## ○ 태안군

| 갈등명                       | 사업개요                                                                                                                                                                                  | 갈등내용                                                                                                                                    | 진행 경과                                                                                                                                                                                                                                                   | 향후 전망                                                                                                                                                   |
|---------------------------|---------------------------------------------------------------------------------------------------------------------------------------------------------------------------------------|-----------------------------------------------------------------------------------------------------------------------------------------|---------------------------------------------------------------------------------------------------------------------------------------------------------------------------------------------------------------------------------------------------------|---------------------------------------------------------------------------------------------------------------------------------------------------------|
| ❶ 안면도 관광지 개발<br>무산에 따른 반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안면(승안, 신야, 중장) 일원</li> <li>◦ 면적: 2,993km<sup>2</sup></li> <li>◦ 기간: '91~'20</li> <li>◦ 사업비: 1조474억원</li> <li>◦ 대상: 인터퍼시픽 컨소시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무산 주민반발</li> <li>◦ 장기간(24년)규제로 주민 불만</li> <li>◦ 도(지사) 사과 요구</li> <li>◦ 조기 대책마련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26: 도, 무산기자회견(국장)</li> <li>◦ '15.1.27: 군, 기자회견(군수)</li> <li>◦ '15.1.28: 비대위 항의 방문(부지사)</li> <li>◦ '15.2.6: 비대위 항의 방문(도지사)</li> <li>◦ '15.2.13: 안면방문(국장)</li> <li>◦ '15.2.17: 도지사 안면도 방문(주민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 대책 미수립시 주민 집단 민원 예상</li> <li>◦ 사업추진을 위한 범 협의체 구성</li> <li>◦ 장기 저리 임차방안 추진요구</li> <li>◦ 부분개발 요구 등</li> </ul> |

## 4. 3차 의원연구모임 및 현장방문 개최

- 일 시 : 2015. 7. 16.(목) 14:00 ~ 18:00
- 장 소 : 은산면사무소,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 참석인원 : 15명(도의원 2명, 외부전문가 5명, 관계자 8명)
- 주요내용
  - 1) 의정연구회원, 道 관계관 등 갈등예방 현장조사
    - 은산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사례 분석 및 갈등실태 현장견학
    - 현장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2) 갈등예방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사례 중심 충청남도 대응방안 토론
- 현장방문 결과
  - 은산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현황 보고
  - 1) 사업개요
    - 업 체 명 : (주)한맥
    - 위 치 : 은산면 대양리 산25-1번지 등 25필지
    - 매수토지 : 811,840㎡(245,571평)
    - 시설현황(예정) :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 지정폐기물
    - 매립용량 : 7,895,250톤(30년 운영계획)
  - 2) 주요 진행경과
    - 2012. 6 :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
    - 2012. 8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 2013. 3 : 반대 대책위 임원 및 주민을 업무방해로 37명 고소(고발)
    - 2013. 4 : 민사소송 제기(16명, 135,000천원)
    - 2013. 5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1차)

- 2013. 5 :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굴착신고 신고서 반려(1차)
- 2013. 5 : 환경부에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공문 발송
- 2013. 7 : 환경부장관 부여방문시 매립시설 설치 반대 군정 건의
- 2013. 8 : 환경부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설치제한 지역 : 지류 500m → 1km)
- 2013. 8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2차)
- 2013. 10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2차)
- 2013. 10 : 사업반대 청원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 2013. 12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16명)
- 2014. 1 :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반려 처분 이의 신청
- 2014. 1 : 산지 일시 사용신고 반려처분 적합 통보
- 2014. 10 :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요청(자진취하)
- 2014. 10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3차)
- 2014. 12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반려(3차)
- 2015. 3 :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제기

### 3) 갈등요인과 유형

-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갈등임
- 비선호시설(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함

### 4) 쟁점

- 폐기물 매립장 입지
- 지역이미지 실추 및 경제적 손실
-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불신

# 중도일보

2015년 07월 20일 (월)

지역 14면

## 도의회 지역현안 해결 현장속으로

공공갈등 예방·해소 연구모임  
부여 지정폐기물 매립지 방문  
지역민 - 기업 상생방안 모색

도의회가 도내 산적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사진〉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두고 모두 10명이 활동 중이다.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연구모임은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A 기업은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 7895t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2년 사업예정지 토지를 매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 지역민 간 마찰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역민의 묵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흥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지역민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대표는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다음달 토론회도 예고돼 있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이번 폐기물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산적한 공공갈등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와 분류를 통한 유발 요인을 파악, 갈등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 간담회에는 부여군 관계자를 비롯한 은산면장, 반대 추진위원 등이 참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169 X 163 mm

## 도의회, 폐기물 매립지 관련 갈등 해결 현장 활동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적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양일간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한 갈등 예방을 위해 동행했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연구모임은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A 기업은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 7895톤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2년 사업예정지 토지를 매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 지역민 간 마찰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역민의 복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흥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고

내달 토론회 등 통해 선진 사례 분석 예고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양일간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민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대표는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법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내달 토론회도 예고돼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내국 기자 hnk777@naver.com

214 X 149 mm

## 충청투데이

2015년 07월 20일 (월)  
지역 12면

## “도내 공공갈등 해결” 첫 번째는 부여 폐기물 매립장

충남도의회 갈등 해소 현장활동  
기업-주민 환경 훼손 놓고 이견  
선진사례 참고·토론회 예고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적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

(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한 갈등 예방을 위해 동행했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연구모임은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A 기업은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 7895톤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2년 사업에

정지 토지를 매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 지역민 간 마찰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역민의 복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흥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

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

안이 필요하다. 지역민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대표는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법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내달 토론회도 예고되어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홍표 기자 dream@colodag.co.kr

289 X 86 mm

## 충남도의회, 폐기물 매립장 갈등 해결 앞장

연구모임, 부여 은산면 찾아 주민 의견 수렴  
지역·기업 간 상생 발전 대안 내놓기 주목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적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양일간 부여군 은산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한 갈등 예방을 위해 동행했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부여군 은산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A기업은 2012

년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를 매입, 7천 895t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 지역민 간 마찰이 불가피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역민의 목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홍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 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민 감증을 풀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다음달 토론회도 예고돼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폐기물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산적한 공공갈등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와 분류를 통한 유발 요인을 파악, 갈등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차순우기자

211 X 89 mm

##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해결 활동 '돌입'

"답은 현장에 있다"... 부여 폐기물 매립지 갈등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적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이틀간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한 갈등 예방을 위해 동행했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연구모임은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A

기업은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 7895t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사업예정지 토지를 매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 지역민 간 마찰이 불가피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역민의 목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홍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 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민 감증을 풀 수 있도록 연

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대표는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내달 토론회도 예고되어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이번 폐기물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산적한 공공갈등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와 분류를 통한 유발 요인을 파악, 갈등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민 간담회에는 부여군 관계자를 비롯한 은산면장, 반대 추진 위원 등이 참여했다.

홍석민 기자 designer198@dailykorea

225 X 104 mm

## 충남의회, 공공갈등예방·해소 위한 연구모임 부여 은산면 찾아

(충남=임진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적인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16~17일 양일간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인 갈등 예방을 위해 뭉쳤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연구모임은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A기업은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 7천895t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2년 사업에 정지 토지를 매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 지역민 간 마찰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

역민의 묵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홍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민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공공 갈등 해결 현장 활동

### 부여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방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적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17일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현장을 방문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안용주 선문대 교수를 간사로 총 10명이 도내 산적한 갈등 예방을 위해 뭉쳤다.

그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연구모임은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았다.

이곳은 A기업이 2012년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13만㎡ 용지를 매입해 7895t에 달하는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 간 마찰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임원들은 지역민의 묵은 체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어갔다. 기업과 지역민 간 상생으로 발전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창원 은산면 홍산리 이장은 “그동안 다져온 부여군 굿뜨래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농업기반이 무너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인철 의원(천안6)은 “갈등현장에서 지역민과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도 차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최근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 상생으로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민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대표는 “폐기물 매립지 사업과 관련해 국내 많은 사례가 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한 곳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며 “선진 사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다음달 토론회도 예고돼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이번 폐기물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산적한 공공갈등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와 분류를 통한 유발 요인을 파악, 갈등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민 간담회에는 부여군 관계자를 비롯한 은산면장, 반대추진위원 등이 참여했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mailto:press@shinailbo.co.kr)

## 5.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정책토론회 개최

### 1) 개 요

- 일 시 : 2015. 9. 23.(수) 14:00 ~ 18:00
- 장 소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공공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참석인원 : 70명(충남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토론회(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 참석인사
  - 좌장 : 최진하 소장(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주제발표 :
    -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분석(장창석, 충남연구원)
    -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운영 및 관리 공공성 강화방안(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장용철, 충남대학교)
  - 지정토론자
    - 윤지상 의원(충청남도 의회)
    - 안용주 교수(선문대학교)
    - 이상선 대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양경연 환경협력관(환경부)
    - 이권영 부장(충청투데이)

## 2) 주요 토론 내용

### ○ 이상선 대표

-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은 공정성과 불평등의 문제임
- 현재 여러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기준 폐기물매립 제로화 국가정책에 역행되는 현상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지자체의 대응들을 관점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화력발전소에서는 충남 수요의 3-4배를 넘어서는 발전량을 감당하면서, 수도권 산업체시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음. 충남이 화력발전소 폐기물 슬러지, 재활용 자체매립이 가능한 것 외에는 크게 환경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며, 2020년 정책과 연관하여 더 이상 훼손되기 이전에 충남이 매립장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함
-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권은 충남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이며, 강정리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사업인허가, 법적대응에 취약한 위임사무를 다시 회수해서 충남도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함
- 갈등은 관리의 대상인가?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갈등관리용어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갈등은 조정과 협의의 대상인 자연스러운 현상임. 갈등은 발생자, 사회전체가 책임을져야함. 또한 현재 폐기물정책 매커니즘은 평등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음. 생산배출자, 피해지역, 관리자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두고 관리해야함
- 강정리 사례를 보았을 때, 단체장 의식인지가 중요하며,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주민참여의 투명성,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장 등 지도자(이권을 취할 수 있는)등을 포함하여 설득이 유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태를 교정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의 대응팀 구축 요청(환경 분쟁사항에 투입, 자문, 방향성을 조성하는 팀구축 요청)
- 자원순환촉진법의 시행은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 시민환경단체, 대책위, 지역 의원등과 연계해서 대응조직을 만들어 빠르게 이법제를 관철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음

## ○ 안용주 교수

- 현재 충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주민-사업자 분쟁이며, 강정리, 궤곡리, 은산면등이 사업자들과 송사를 진행중임
-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은 환경적요인 뿐만 아니라 모두의 입장이 갈등속에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대처가 어려움.
-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입지 문제는 시군문제로 국한해선 안됨. 환경과 혐오 시설이라는 키워드로 무조건 반대도 있지만, 각종산단 및 기업유치로 지방세, 법인세등으로 충남도가 발전방향으로도 무시할 수 없음. 매립장 갈등은 지역주민생계, 건강, 환경상문제와 광의의시각도 함께 살펴야 함
- 도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도민행복추구권에 기여할수있는가?
- 지정폐기물 허가권이 지방환경청에 있음. 충남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적 문제가 있어, 행정이 주민갈등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행정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충남도에서는 주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여하기 어려움. 도농복합도시인 충남도는 잠재요소를 숙지하고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갈등에 대한 선행적 이해 필요가 필요함.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공공영역, 즉 국가관여 범위를 벗어나 사익에 위임될 수 있는가? 민간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업을 위임해서 이윤창출이라는 가치를 위해 최소한의 대응을 할 것이고,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에서는 전자메니페스토시스템을 도입중임. 폐기물배출사업자, 수집운반업자, 처분업자 3자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폐기물배출을 억제하는 것 목적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기능임. 서로간의 상호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부여하고 있음
- 개인 기업에 이윤을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위임할 때에는 국가가 수호해야 하며, 공공영역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함

## ○ 양경연 환경협력관

-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처리(소각,매립) → 환경안정적 처리  
→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소각열 활용 난방)으로 정책이 변화함
- 2025년에는 소각방식도 가스화형식으로 변경될 것이며, 플라즈마 용융소각로  
(소각재들도 유리화하여 무해화하는 것) 등의 기술을 도입할 예정임
- 즉, 과거에는 방법이나 기술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이 주 처리방법이었으나  
기술발달로 환경적으로 무해한 재활용 극대화 중임
- 현재 소각로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간접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가 큼
-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입지선정시 주민신청을 받거나, 지자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주민공고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걸쳐 시설확보)을 거치지만, 사업장폐기물에는 이러한 과정(제도)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추구하고자 하나 배출자,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가중  
되면서 산업부등 부처간 협의가 어려운 현실임. 현재 절차적 정당성, 비용  
편익을 고려하는 법제적 측면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중임
- 폐기물 처리법은 완성도가 높은 편이며.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미흡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의 폐기물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사업장의 영업구역제한 등으로  
헌법소원에서 환경부가 패소하면서 지역이동 조항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며,  
수도권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등으로 충청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임
- 이들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으며, 자치  
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에 대한 민원과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 윤지상 의원

- 현재 충남도는 경기도와 도계분쟁중임
- 이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매립장 입지갈등 문제도 6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전체적 차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며, 도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중임
- 공공성강화 방안과 배출자 책임의 원칙에 대한 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부처간 통합관리가 필요함
- 의회에서는 충남도 집행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음.
- 또한 폐기물 관리의 미래예측, 정당성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자 경제논리 접근을 막아야 함
- 조례제정을 위한 검토를 통해 인허가 서류검토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지자체의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향을 통해 협력해서 공동대응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해당내용들을 공약사항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이권영 부장

- 지역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기업체와 정부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홍수열 소장

- 도의회 차원에서 당장(단기적 전략)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업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불허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사업계획을 세움. 이런 태도의 사업자를 대하는 행정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시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런 대응을 통해 금강유역이 허가받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인허가 검토시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의견 청취하도록 조례로 지정해야함

클릭충청  
충남

## 충남도내 폐기물 사업장 갈등, 면밀히 분석한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서 토론회 개최

이정민 기자 | jmpuhaha@goodmomingoc.com



승인 2015.09.23 09:36:00



▲ 윤지상 충남도의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기물 사업장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격하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 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고 있다"며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역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2013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301t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3위 수준이다. 매립량 역시 171만으로,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연구모임 폐기물 사업장 사례 분석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015년 09월 24일 목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5년 09월 23일 19시 53분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기물 사업장 입지 문제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을 주제로 문제점을 나열했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격하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 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고 있다"며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역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7월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남도의회, 도내 폐기물 사업장 갈등 원인 분석

연구모임, 갈등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마련  
타 지역 선진사례 공유 등 상생 방안 제시

2015년 09월 23일 (수) 19:45:46

차순우 기자 ☎ woonge100@korea.com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기물 사업장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 나섰다.

사업자와 지역민간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타 지역 선진사례를 살핀 뒤,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계산으로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상(아산4·사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 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선임연구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을 주제로 문제점을 나열했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격하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 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고 있다"며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역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2013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천301t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3위 수준이다. 매립량 역시 171만t으로,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위해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후 관리 기금 인상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도내에서는 당진(2만1천590t)→보령(4천382t)→태안(3천897t) 순으로 폐기물 발생 빈도가 높다"며 "충남은 생활폐기물보다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발생량이 폐기물 축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폐기물 발생량이 2009년~2013년 5년 사이에 31% 이상 늘었다"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자 자격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로 인근 충청 지역에 집중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넘어 지역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7월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바 있다.

## 충남도의회, 도내 폐기물 사업장 등 공공갈등 사례 분석 나서

데스크승인 [6면] 2015.09.23

김현호 기자 | khh0303@ggilbo.com

충남도의회가 충남지역 폐기물 사업장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 나섰다.

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을 주제로 문제점을 나열했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2013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301톤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3위 수준이다. 매립량 역시 171만톤으로 전국 1위"라고 지적하면서 "사후 관리 기금 인상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도내에서는 당진(2만 1590톤)→보령(4382톤)→태안(3897톤) 순으로 폐기물 발생 빈도가 높다"며 "지역 폐기물 발생량이 2009년~2013년 5년 사이에 31% 이상 늘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사업자 자격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넘어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 도의회, 공공갈등 사례 분석 나서

사업자-지역민 간 갈등 원인 분석

한내국 기자 | hnk777@naver.com

승인 2015.09.24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기물 사업장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 나섰다.

사업자와 지역민 간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타 지역 선진사례를 살핀 뒤,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을 주제로 문제점을 나열했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격하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 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고 있다."며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역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난 2013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301톤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3위 수준이다. 매립량 역시 171만톤으로,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위해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후 관리 기금 인상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도내에서는 당진(2만1590톤)→보령(4382톤)→태안(3897톤) 순으로 폐기물 발생 빈도가 높다."며 "충남은 생활폐기물보다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발생량이 폐기물 축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폐기물 발생량이 2009년~2013년 5년 사이에 31% 이상 늘었다."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자 자격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지상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로 인근 충청 지역에 집중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넘어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7월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바 있다.

## 충남도의회, 도내 폐기물 사업장 등 공공갈등 해법찾기 나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자와 지역민 간 갈등 원인 분석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축적 주요 원인… 2009~2013년 폐기물 31% 이상 증가

기사입력 : 2015-09-23 14:20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기물 사업장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 주제발표를 했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격하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 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고 있다"며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사업자와 지역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상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로 인근 충청 지역에 집중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넘어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7월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바 있다./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2015. 9. 23.(수)

##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목 차

|                                                             |           |
|-------------------------------------------------------------|-----------|
| <input type="checkbox"/> <b>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갈등 정책토론회 계획</b> | <b>3</b>  |
| <input type="checkbox"/> <b>주제발표</b>                        |           |
| ○ <b>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갈등 사례분석</b><br>(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 <b>5</b>  |
| ○ <b>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운영 및 관리 공공성 강화방안</b><br>(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b>21</b> |
| ○ <b>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방안</b><br>(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 <b>35</b> |

#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1 토론회 개요

### □ 목 적

-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로 인근 충청 지역에 집중적 설치가 이어지고 있어,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발생함
-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을 넘어선 지역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 내 용

- 환경 및 폐기물전문가 주제발표
- 주민피해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
- 전체토론 및 의견 수렴

###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9. 23.(수), 14:00 ~ 17:00
- 장 소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 충청남도 의회
- 주 관 : 충남연구원,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 2 행사일정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4:00~14:10 | 10 ' | • 장내 정돈                                                                                                                                                  |                            |
| 14:10~14:20 | 3 '  | • 개회사 및 인사말                                                                                                                                              |                            |
| 14:20~14:40 | 20 ' | • 주제발표 1<br>-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                                                                                                                | 장 창 석<br>전임연구원<br>(충남연구원)  |
| 14:40~15:00 | 20 ' | • 주제발표 2<br>-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관리 공공성 강화 방안                                                                                                                     | 홍 수 열<br>소장<br>(자원순환경제연구소) |
| 15:00~15:20 | 20 ' | • 주제발표 3<br>-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방안                                                                                                                    | 장 용 철<br>교수<br>(충남대학교)     |
| 15:20~15:30 | 10 ' | • 휴 식                                                                                                                                                    |                            |
| 15:30~16:30 | 60 ' | • 종합토론<br>- 좌 장 : 최진하 소장(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br>- 토론자 :<br>• 윤지상 의원(충청남도 의회)<br>• 안용주 교수(선문대학교)<br>• 이상선 대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br>• 양경연 환경협력관(환경부)<br>• 이권영 부장(충청투데이) |                            |
| 16:30~17:00 | 30 ' | • 질의 응답                                                                                                                                                  |                            |
| 17:00       |      | • 폐 회                                                                                                                                                    |                            |

제1주제

#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분석

장창석 전임연구원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

2015. 9. 23.  
충남연구원 장창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목차

1. 공공갈등 개요
2. 충청남도 사례분석
3. 타 지역 사례
4. 시사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공공갈등 개요

1. 공공갈등이란
2. 갈등발생 주요원인
3.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4. 관리 필요성

## 공공갈등의 개념 및 주요원인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공공갈등이란

-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각종 사업 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개되는 갈등
- ✓ 공공갈등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특별히 공공분쟁(public dispute)이라 함

### 갈등발생 주요원인

-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님비(NIMBY), 핼피(PIMFY)현상 심화  
-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된 반면, 책임과 능력은 미흡
- ✓ 주민과 정부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미흡  
-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 ✓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과정 답습  
- 국가(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의 인식론적 의사소통 미흡

####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 ✓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갈등 확산
  - 경제개발 속에서 이념이나 노동문제 등 계층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
-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간 갈등 증가
  -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입지, 기업유치,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 갈등
- ✓ 2000년대부터는 갈등의 대상이 확대 및 다양화
  -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보다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갈등이 확산·증가

#### 관리의 필요성

- ✓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 갈등발생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요구
-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 제도적 시스템 필요
-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 갈등 사안의 광역화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5

# 충청남도 사례분석

## 1. 입지갈등지역

## 서산시

### 입지개요

- ✓ 위치 : 서산시 장동 470-1 일원
- ✓ 규모 : 19만㎡
- ✓ 유형 : 동형식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시설  
- 소각재, 분진, 오니 등 지정폐기물 처리

### 추진경과

- '13. 6. 25. : 오산지역 8개동장 주민대표 매립시설 견학
- '13. 7. 09. : 자체주민설명회 개최(예정부지 인근부락민)
- '13. 7. 19. : 금강청에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접수(당일철회)
- '13. 7. 22. :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 '13. 8. 02. : 반대위금강청에 반대신청서 제출
- '13. 8. 13. : 석남동 단체장 등 사업체 방문(반대위 의견전달)
- '13. 8. 16. : 반대대책위원회 시장 면담
- '13. 8. 25. : 부시장님, 사업주와 면담
- '13. 9. 05. : 서산시, 사업반대입장 표명(방송 및 지역언론)

### 이해관계자

- ✓ 서산시,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쟁점

#### 01 배경 및 원인

민간업체 서산시 장동 일원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02 주요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주민) 청정농업지역 및 철새도래지 훼손 우려  
지하수오염 등으로 지역주민 건강 저해  
(업체) 개발이 어려운 지역개발로, 주민에게 도움됨  
보상, 자금 및 시설설치로 지역환경 계획

7

## 청양군

### 입지개요

- ✓ 위치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산8-1 일원
- ✓ 규모 : 약 6만㎡
- ✓ 유형 : 에어돔 형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  
- 매립면적 3만 5400㎡에 일 105만 6,196톤의 폐기물 처리

### 추진경과

-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 구성, 반대집회 추진
- ✓ 폐기물 매립장 부적정 행정소송 제기 (사업자-대전지방법원)
- ✓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 (위원장 이영기 변호사, 9명)
- '13. 8. 14. :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반대 대책위 설립
- '13. 12. 12. : 주민감사청구 (지역주민→도 감사위원회)
- '14. 6. 22.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제기에 따른 굴착조사 (특이사항 미발견)
- '14. 8. 25. :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 '14. 10. 27.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이해관계자

- ✓ 청양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쟁점

#### 01 배경 및 원인

민간업체에서 청양군 강정리 폐석면 광산지역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허가신청을 제기(13.8.14).

#### 02 주요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주민) 현재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폐쇄  
신규 매립장 설치 불가  
(업체) 적법하게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장 설치강행

8

## 입지갈등 지역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I 부여군

#### 입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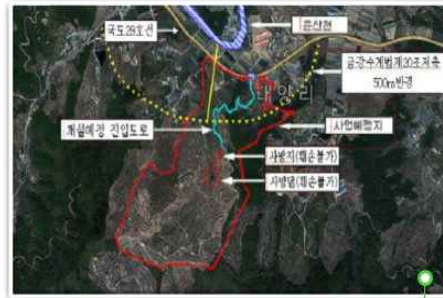
- ✓ 위치 :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산 25-1 일원
- ✓ 규모 : 81만 1,840m<sup>2</sup>
- ✓ 유형 : 밀폐형 동형식, 폐기물처리장 4개소  
-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 사업장 폐기물 매립

#### 추진경과

- '12.6 : 사업예정지토지 매입 및 주민 설득 작업 시작
- '12.8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 '12.1~'14.12 : 사업예정지 집회와 시위, 반대집회  
- 사업자, 주민상대 고소,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제기
- '13.5, '13.8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신고 (부여군 2회 모두 반려)
- '14.10 : 3차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
- '15.03 : 3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진행중)
- '15.2, '15.4 : 사업자, 설치 협조요청 문서발송(은산면장)

#### 이해관계자

- ✓ 부여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쟁점

##### 01 배경 및 원인

민간업체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함

##### 02 주요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주민) 대상지역은 상습 재난지역으로 환경재앙우려  
친환경 농업이미지 및 백제 왕도이미지 훼손,  
지역경제 붕괴 및 세계유산등재에 악영향  
(업체) 법령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사업 행위

9

## 입지갈등 지역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I 예산군

#### 입지개요

- ✓ 위치 : 예산군 대술면 굴곡리 산 57번지 일대
- ✓ 규모 : 9만 3,511m<sup>2</sup>
- ✓ 유형 :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매립(처리)시설  
- 소각재 및 연소재, 오폐수, 폐석면(지정폐기물 외) 등

#### 추진경과

- '13.9.11 : 사업계획서 접수
- '13.9.13 : 매립시설 설계(기술) 및 환경조사서 검토 의뢰
- '13.9.16 : 군수, 부군수와 주민대회(반대의견 전달)
- '13.10.16 :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13.10.17 : 심의결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 '14.1.21 : 행정소송 접수(대전지방법원)
- '14.12.04 : 판결선고(원고 승소)
- '14.12.22 : 항소장 제출
- '2015년 현재 2심 진행 중

#### 이해관계자

- ✓ 예산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쟁점

##### 01 배경 및 원인

민간업체에서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  
악취발생, 환경훼손을 이유로 주민반발이 시작됨

##### 02 주요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주민) 비오름지도 용역결과 1등급, 절대보전지역  
예산군의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부적합,  
주민 집단민원 및 상수원, 지하수 오염 우려  
(업체) 부적합처분통보는 비합리적 주관적 처분임

## I 서천군

### 입지개요

- ✓ 위치 : 서천군 중천면 화산리 산 14-9
- ✓ 규모 : 부지 2만 3,010m<sup>2</sup>
- ✓ 유형 : 일반폐기물 매립(처리)시설

### 추진경과

- ✓ 2007년~2009년 진행현황 (1차 소송)
  - '08. 11. 26. : 1심 판결선고 ⇨ 원고패
  - '09. 09. 17. : 2심 판결선고 ⇨ 원고패
  - '09. 12. 10. : 3심 판결선고 ⇨ 원고패소기각
- ✓ 2011년~2014년 10월 (2차 소송)
  - '13. 07. 17. : 1심 판결선고 ⇨ 원고승
  - '14. 05. 29. : 2심 판결선고 ⇨ 원고패
  - '14. 10. 15. : 3심 판결선고 ⇨ 원고패소기각
- ✓ 2014년 10월 15일 이후 (3차 사업계획서 제출)

### 이해관계자

- ✓ 서천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쟁점

#### 01 배경 및 원인

해당지역에 일반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제출

#### 02 주요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주민) 매립폐기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에 대한 우려, 어메니티 생태도시의 이미지훼손

11

## I 금산군

### 입지개요

- ✓ 위치 :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775번지 외
- ✓ 규모 : 부지 약 9,000m<sup>2</sup>
- ✓ 유형 : 의료폐기물소각장 (48t/일)

### 추진경과

- '14. 11. :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신청서 접수
- '14. 11. 11. : 금강유역환경청, 사업계획에 조건부 적합 통보
- '14. 11. 26. : 금산군에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 '14. 12. 18. :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 '15. 1. 06. : 금산군, 자문회의 결과 사업계획 반려처분
- '15. 1. 07. : 사업자, 사업계획서 취하원 제출

### 이해관계자

- ✓ 금산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쟁점

#### 01 배경 및 원인

민간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

#### 02 주요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주민) 2차 세균감염위험,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과 악취, 침출수 등으로 주민건강저해, 농산물 판매 저하로 지역경제에 피해

12

# 충청남도 사례분석

## 2. 갈등사례분석

### 갈등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부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갈등

##### 개요

- ✓ 업체명 : (주)한맥
- ✓ 위치 : 은산면 대양리 산25-1번지 등 25필지
- ✓ 매수토지 : 811,840㎡ (245,571평)
  - 총사업면적 : 421,206㎡ (127,638평)
  - 최종매립지 조성면적 : 130,096㎡ (39,423평)
  - 중간처리 시설면적 : 46,343㎡ (14,043평)
  - 기타면적 : 244,767㎡ (74,191평)
- ✓ 시설현황(예정)
  -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 지정폐기물
  - 매립용량 : 7,895,250톤 (30년 운영계획)



## I 부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갈등

### 주요 진행경과

- '12.6 : 사업예정지 토지매입
- '12.8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 구성
- '13.3 : 반대대책위 임원 및 주민을 업무방해로 37명 고소(고발)
- '13.4 : 민사소송 제기(16명, 135,000천원)
- '13.5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1차)
- '13.5 :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굴착신고 신고서 반려(1차)
- '13.5 : 환경부에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공문 발송
- '13.7 : 환경부장관 부여 방문시 매립시설 설치 반대 군정 건의
- '13.8 : 환경부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 '13.8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2차)
- '13.10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2차)
- '13.10 : 사업반대 청원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 '13.12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16명)
- '14.1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처분 이의 신청
- '14.1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처분 적합 통보
- '14.10 :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요청(자진취하)
- '14.10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3차)
- '14.10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반려(3차)
- '15.3 :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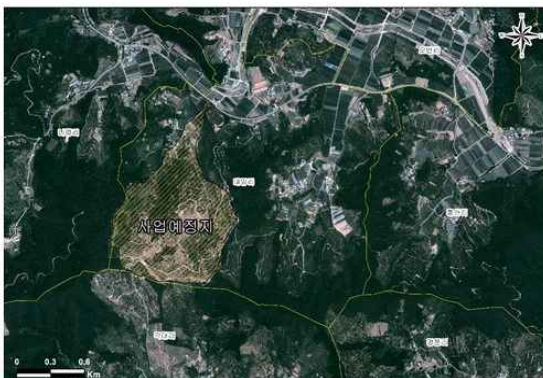
## I 갈등요인과 유형

### 성격(특성)

- ✓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갈등임
- ✓ 비선후시설(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함

### 쟁점

- ✓ 폐기물 매립장 입지
- ✓ 지역이미지 실추 및 경제적 손실
- ✓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16

## I 갈등분석결과

### 핵심쟁점 분석

#### ✓ 폐기물 매립장 설치

- 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있음
- 은산면에 입지 예정인 폐기물매립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임
- 은산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입지와 사업허가에 대한 정책결정 · 집행주체는 환경부이며, 결정 · 집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입장 · 이익의 고려보다 전체적 입장에서 기술적 · 행정적 관점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특성과 문제점을 인지한 부여군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업체는 법적 ·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 해 갈등이 발생중임



17

## I 갈등분석결과

### 하위쟁점 분석

#### ✓ 정주권 · 재산권 침해

- 폐기물매립장 설치 예정지역은 은산면 축령봉 일대 고지대에 위치하며, 은산천과 민가에 인접함
- 또한 인근에 야생동물보호구역(부여 제97-26호)이 존재하며, 삼 · 수달 · 수리부엉이 · 올빼미 · 원앙 · 반딧불이 · 북방산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임
- 폐기물매립장의 혐오성과 지역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함
- 부정적 지역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치하락 우려를 포함하고 있음



18

## I 갈등분석결과

### 하위쟁점 분석

#### ✓ 지역적 편익 불균형

- 은산면에 설치예정인 폐기물매립장은 타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임
- 폐기물매립장 및 입지로 인한 이익은 업체와 타지역의 오염원 배출자가 향유하며, 소음·악취·건강문제·자연훼손은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함
-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중임

#### ✓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불신

-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안정성, 관리·운영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이 해당됨
- 대부분의 주민들이 설치예정인 매립장이 공공폐기물매립장이 아니며, 민간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인 바 사익을 위한 기술적 안정성에 우려감을 표출함
- 또한 수익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기술적 안정성 또한 갈등요인으로 작용중임

## 타지역 사례

충청북도 제천 왕암매립장

##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 매립장

### 입지개요

- ✓ 위치 :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48 (왕암동 989)
- ✓ 허가 : 지정폐기물 및 그 외의 폐기물 허가  
- 지정폐기물 '06.1.9.(원주청), 그 외 '06.1.10(제천시)
- ✓ 사용기간 : '06.1.20~현재
- ✓ 매립방식 : 관리형 매립시설(CELL 방식)
- ✓ 시설현황 : 부지 27,676m<sup>2</sup>, 매립 17,762 m<sup>2</sup>  
용적 244,772m<sup>3</sup>, 매립고 22.5m
- ✓ 매립현황 : 매립량 237,531m<sup>3</sup>, 매립율 97%  
- 지정폐기물(폐석면 등 23종), 그외 소각재 등 19종

### 추진경과

- '06. 1 : (주)대원인바이로텍이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운영
- '10. 5 : 지하수 배제정 오염등으로 매립시설 사용불가통보
- '11. 4 : (주)에너지드림 경매를 통해 권리의무 승계(55억)
- '12. 12 : 폭설로 인해 폐기물매립시설 에어돔 약 40m 가량  
찢어져 붕괴

### 문제점

#### 01 침출수 유출 우려

에어돔이 붕괴되어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될 경우 매립장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 피해 우려

#### 02 사업자 의무 미이행

사업자의 시설관리 미이행 및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미납(30억원) 등으로 인해 최종 안정화 조치가 불가

#### 03 안정화 추진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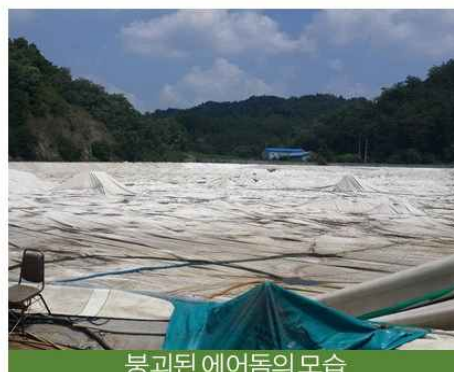
사업자 의무 미이행에 따른 대안으로 제천시가 매립시설을 낙찰받아 최종 안전화조치를 제안 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입장



##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 매립장



제천시 왕암매립장 전경



붕괴된 에어돔의 모습

# 시사점

1. 정책주체간 합의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 설치 절차의 개선 및 활용

## 시사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정책주체간 합의

- ✓ 협의는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임
- ✓ 정책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하향적 결정이 이어진다면 이는 주민의 반발을 야기할것임
- ✓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는 정책과정에 순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협력적 관계의 부재는 소통부재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타 사업에서도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함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 폐기물매립장 설치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실제 설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등 협력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함

24

설치 절차의 개선 및 활용

- ✓ 현 폐기물관리법은 배출자 책임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지역의 집단적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국가 또는 공공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비 선회 시설에도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 폐기물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시설관련법 등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조항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음
- ✓ 주민참여가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의 상황, 공동체의 특성 등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 및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한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25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주제

#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관리 공공성 강화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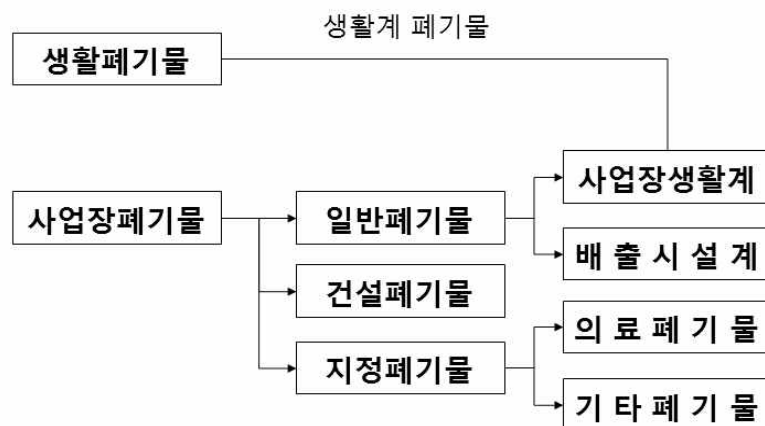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경제연구소)

#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관리 공공성 강화방안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1) 폐기물 분류 ⇒ 배출원 기준 분류



2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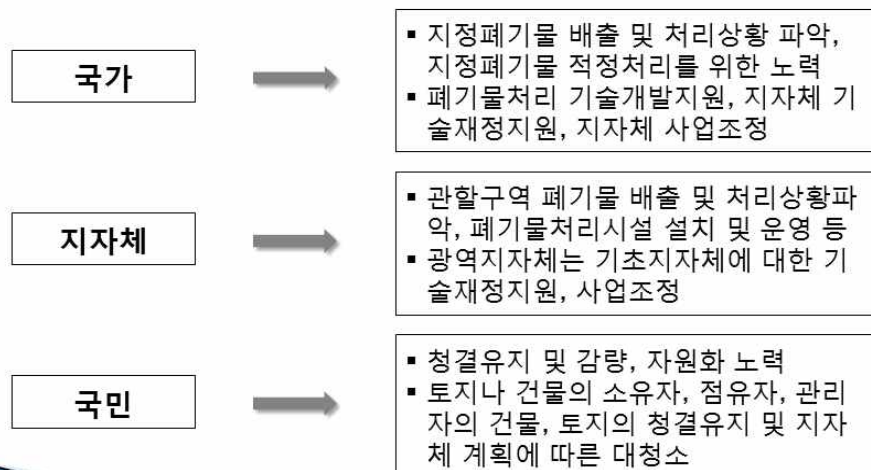
## 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3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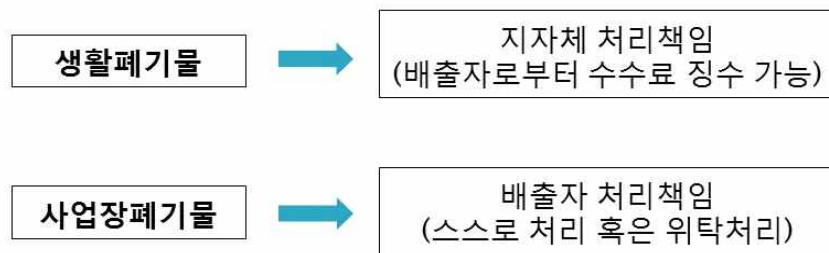
## 3) 주체별 책무(폐관법 4조, 7조)



4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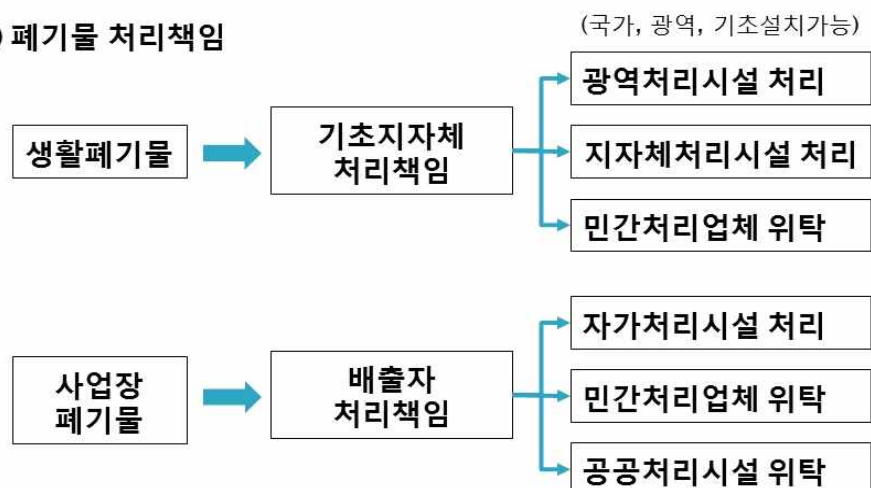
### 3) 폐기물 처리책임(폐관법 14조, 18조)



5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 3) 폐기물 처리책임



6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 4) 매립시설 설치절차



<폐기물처분업 허가절차 :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는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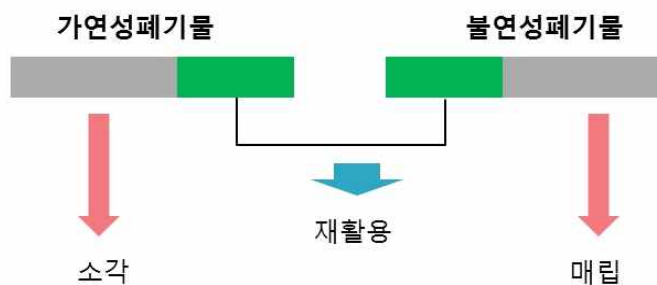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300톤/일 이상,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매립시설에만 적용>

7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1) 사업장폐기물 관리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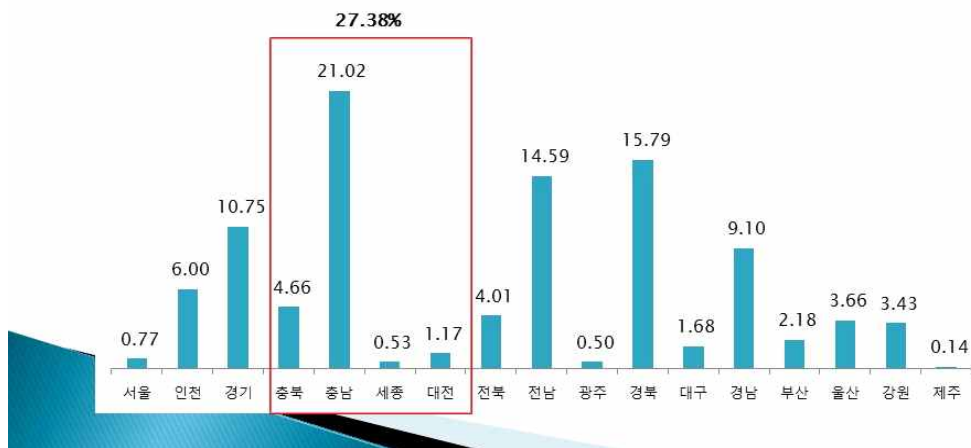
폐기물관리 우선순위 : 재활용 > 소각 > 매립

8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2)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49,815톤/일이며,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31,491톤/일로 전국 최대



9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2)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 2013년 기준 사업장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발생량은 11,993톤/일이며,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301톤/일로 전국 3위



10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3) 사업장폐기물 매립현황

-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연간 매립량은 899만톤이며, 충남의 매립량은 171만톤으로 전국 1위



11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3) 사업장폐기물 매립현황

- 2013년 기준 사업장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연간 매립량은 86만톤이며, 충남의 매립량은 3.8만톤으로 전국의 4.4%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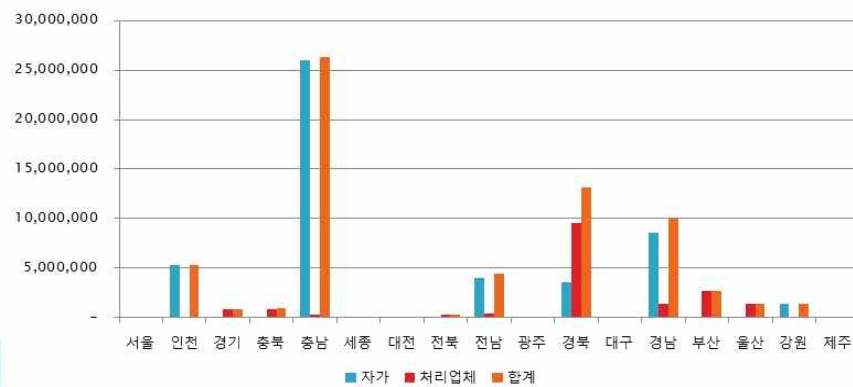


12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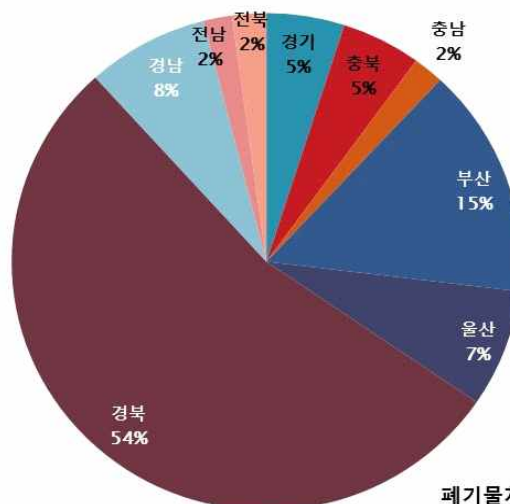
### 4)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용량 기준으로 총 66,877m³가 남아 있음. (자가매립시설 73%, 처리업체 27%)



13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잔여용량  
지역별분포

14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4)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지역별 매립지 잔여연수(지역별 연간매립량/잔여매립용량)는 영남권 18.1년, 충청권 12.7년, 강원권 12.8년, 호남권 8.1년, 수도권 2.1년



15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5) 소결

- 충남지역은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매립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높으며,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배출 폐기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발전소 자체 매립시설 영향으로 자가 매립시설 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큼.
- 수도권 지역 매립폐기물 발생량 대비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이 매우 부족함. 수도권 지역 발생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이 압력이 충청권에서 발생하고 있음.(물류 등을 감안할 때 충청지역이 민간처리업체 관점에서 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있음.)

16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

#### 1) 문제

-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은 오염원인자(배출자) 책임이며, 집합적 관점에서 배출지역 책임의 원칙으로 확장할 수 있음.
- 배출지역 책임의 원칙은 폐기물처리의 형평성(환경정의)과 환경성에 부합함.
- 향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 배출지역과 처리지역의 불균형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비용을 증가시킬 것임.

17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

#### 1) 문제

-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간 갈등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간 갈등조정이 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전환이 가능하지만,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 환경부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매립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업범위 설정제한 금지규정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매립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대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18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

#### 2) 문제해결 방안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공공매립시설 설치의 실효성은 현행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민간매립시설 설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효과가 떨어지며, 오히려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 혼재로 인한 혼란(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갈등발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이 방안은 관련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19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

#### 2) 문제해결 방안

-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은 허용하되, 무분별한 지역간 이동을 억제하고, 설치 및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검토 전 주민정보 공개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감시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간 이동관련하여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차등수수료(혹은 매립부담금 차등부과)

20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

#### 2) 문제해결 방안

- 매립지 사후관리 관련하여 '먹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지 사후관리 기금의 인상과 현실화가 필요함.
- 매립지 사용 중 혹은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붕괴 등의 사고, 침출수 유출 등)와 관련한 보험의 필요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의 분담 (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음)

21



감사합니다

22

제3주제

#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방안

장용철 교수 (충남대학교)

#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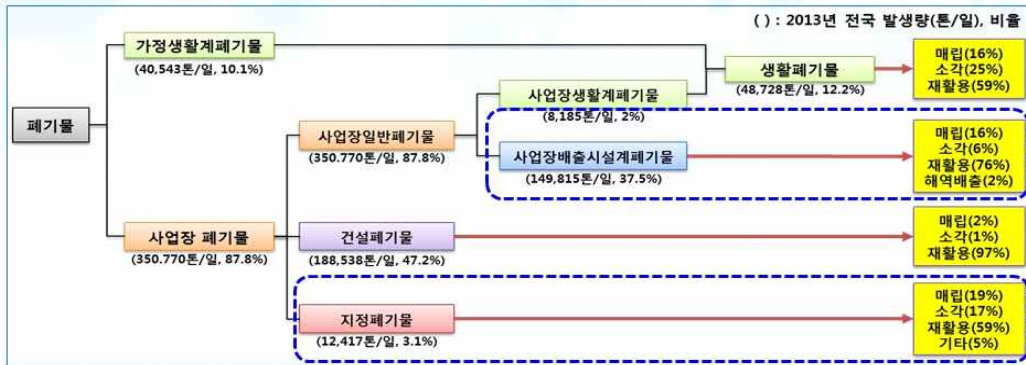
장용철

## CONTENTS

- 1 국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특성 >>
- 3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
- 4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 5 요약 및 결론 >>

# 1. 국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 국내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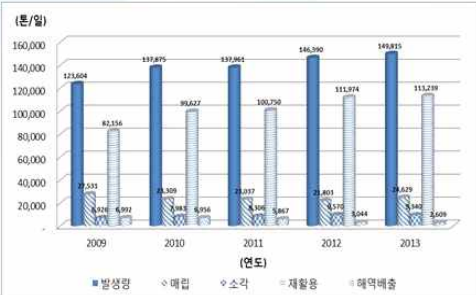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재활용(76%) > 매립(16%) > 소각(6%)
- 건설폐기물 : 재활용(97%) > 매립(2%) > 소각(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그 종류와 처리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매립지에서는 개별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움
- 건설폐기물의 경우 국내 전체 폐기물 50%에 상당하는 비율을 차지함. 건설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로 인하여 국가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게 산정됨.

3

# 1. 국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 국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그림.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49,815톤/일의 발생량을 나타냄
- 발생원에 따른 성상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상별 처리 방법이 매우 다양함
- 불연성 성분이 높고 특성이 다양하여 타 폐기물과 혼합 배출 및 보관을 금지하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함

| 폐기물 종류 |                   | 발생량<br>(톤/일) | 처리방법(톤/일) |       |         |       |
|--------|-------------------|--------------|-----------|-------|---------|-------|
|        |                   |              | 매립        | 소각    | 재활용     | 해역배출  |
| 가연성    | 총계                | 149,815      | 24,629    | 9,340 | 113,239 | 2,609 |
|        | 소계                | 35,911       | 3,797     | 9,004 | 20,684  | 2,427 |
|        | 폐지류               | 128          | -         | 7     | 121     | -     |
|        | 폐목재류              | 2,990        | -         | 141   | 2,840   | 10    |
|        | 폐합성<br>고분자<br>화합물 | 폐섬유류         | 227       | 9     | 67      | 150   |
|        |                   | 폐합성수지        | 9,157     | 191   | 3,177   | 5,783 |
|        |                   | 폐합성고무        | 382       | 3     | 70      | 309   |
|        |                   | 폐피혁          | 38        | -     | -       | 37    |
|        | 유기성<br>오니류        | 폐수처리오니       | 9,336     | 894   | 2,556   | 3,550 |
|        |                   | 공정오니         | 1,281     | 199   | 274     | 757   |
|        |                   | 정수처리오니       | 130       | 7     | 1       | 122   |
|        |                   | 하수처리오니       | 6,091     | 1,441 | 1,987   | 2,653 |
|        | 동식물성잔재물           | 3,369        | 154       | 232   | 2,972   | 12    |
|        | 폐식용유              | 31           | -         | -     | 31      | -     |
|        | 기타                | 2,752        | 899       | 493   | 1,359   | 1     |
|        | 소계                | 113,904      | 20,832    | 336   | 92,555  | 182   |
| 불연성    | 광재류               | 7,478        | 1,216     | -     | 6,272   | -     |
|        | 연소재               | 22,398       | 4,087     | 9     | 18,302  | -     |
|        | 소각재               | 8,134        | 4,902     | 108   | 3,124   | -     |
|        | 분진류               | 4,495        | 931       | 2     | 3,563   | -     |
|        | 폐주물사오래류           | 5,187        | 1,392     | 4     | 3,791   | -     |
|        | 폐금속류              | 27,680       | 149       | 2     | 27,528  | -     |
|        | 폐석화석고류            | 1,820        | 262       | -     | 1,559   | -     |
|        | 폐촉매               | 150          | 36        | -     | 114     | -     |
|        | 폐플라스틱재류           | 229          | 98        | 4     | 127     | -     |
|        | 유리도자기류            | 1,338        | 186       | 1     | 1,151   | -     |
|        | 무기성<br>오니류        | 폐수처리오니       | 8,108     | 2,038 | 160     | 5,759 |
|        |                   | 공정오니         | 5,108     | 810   | 19      | 4,251 |
|        |                   | 정수처리오니       | 667       | 187   | -       | 479   |
|        |                   | 하수처리오니       | 605       | 256   | 2       | 347   |
|        | 기타                | 2,0513       | 4,294     | 24    | 16,187  | 7     |

<표. 2013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4

## 1. 국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표. 2013년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구분 | 매립시설   |              | 자가처리업체 |              |
|----|--------|--------------|--------|--------------|
|    | 지방자치단체 | 자가처리업체       | 지방자치단체 | 자가처리업체       |
| 시도 | 시설 수   | 총 매립지 면적 (㎡) | 시설 수   | 총 매립지 면적 (㎡) |
| 전국 | 221    | 31,932,018   | 38     | 13,819,463   |
| 서울 | -      | -            | -      | -            |
| 부산 | 1      | 747,922      | -      | -            |
| 대구 | 1      | 853,400      | -      | -            |
| 인천 | 5      | 19,793,391   | 2      | 1,708,029    |
| 광주 | 1      | 644,159      | -      | -            |
| 대전 | 1      | 707,515      | 1      | 2,597        |
| 울산 | 2      | 360,276      | 3      | 56,060       |
| 세종 | 1      | 5,569        | 1      | 1,550        |
| 경기 | 9      | 706,198      | -      | -            |
| 강원 | 24     | 1,202,476    | 2      | 360,256      |
| 충북 | 13     | 438,719      | 2      | 17,161       |
| 충남 | 16     | 628,462      | 7      | 7,529,272    |
| 전북 | 14     | 855,068      | 1      | 10,322       |
| 전남 | 58     | 1,618,335    | 7      | 975,251      |
| 경북 | 38     | 1,028,558    | 5      | 717,884      |
| 경남 | 27     | 2,025,486    | 7      | 2,441,081    |
| 제주 | 10     | 316,484      | -      | -            |

<표. 2013년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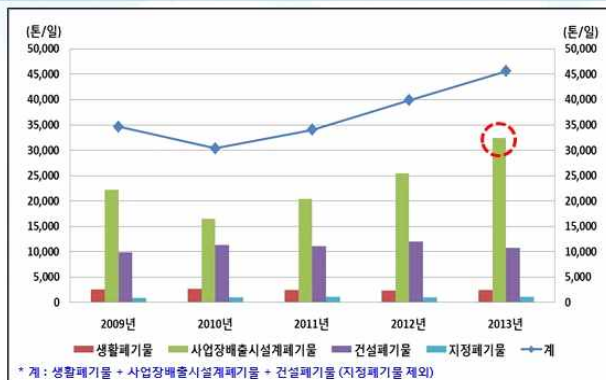
| 구분 | 소각시설   |            | 자가처리업체 |            | 자가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
|----|--------|------------|--------|------------|----------------------|------------|
|    | 지방자치단체 | 자가처리업체     | 지방자치단체 | 자가처리업체     | 지방자치단체               | 자가처리업체     |
| 시도 | 시설 수   | 시설용량 (톤/일) | 시설 수   | 시설용량 (톤/일) | 시설 수                 | 시설용량 (톤/일) |
| 전국 | 182    | 16,739     | 14     | 47         | 243                  | 7,216      |
| 서울 | 5      | 2,898      | -      | -          | 1                    | 90         |
| 부산 | 2      | 510        | -      | -          | 11                   | 11         |
| 대구 | 1      | 480        | -      | -          | 8                    | 308        |
| 인천 | 10     | 982        | -      | -          | 16                   | 265        |
| 광주 | 1      | 320        | -      | -          | 1                    | 10         |
| 대전 | 1      | 400        | -      | -          | 2                    | 679        |
| 울산 | 2      | 650        | -      | -          | 1                    | 400        |
| 세종 | 1      | 45         | -      | -          | 2                    | 330        |
| 경기 | 24     | 5,014      | 9      | 10         | 84                   | 889        |
| 강원 | 16     | 582        | -      | -          | -                    | -          |
| 충북 | 10     | 499        | 1      | 2          | 15                   | 993        |
| 충남 | 9      | 660        | 3      | 31         | 12                   | 41         |
| 전북 | 2      | 600        | -      | -          | 24                   | 1,679      |
| 전남 | 51     | 495        | -      | -          | 12                   | 633        |
| 경북 | 22     | 739        | -      | -          | 17                   | 347        |
| 경남 | 18     | 1,587      | 1      | 4          | 37                   | 495        |
| 제주 | 7      | 277        | -      | -          | 2                    | 47         |

- 2013년 환경부 통계 상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 총 259개 시설(지방자치단체 221개소, 자가처리업체 38개소)
-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 총 439개 시설  
(지방자치단체 182개소, 자가처리업체(생활폐기물) 14개소, 자가처리업체(사업장폐기물) 243개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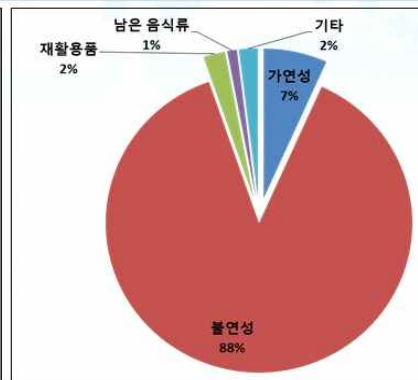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 충남지역 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조성 비율



<그림. 충청남도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 추이>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그림. 2013년 충청남도 발생 폐기물 구성 성분 비율>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09년 34,663톤/일 → 2013년 45,585톤/일 : 약 31.5% 증가율을 나타냄 (지정폐기물 제외)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 : 2009년 2,551톤/일 → 2013년 2,411톤/일, 소폭 감소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2009년 32,377톤/일 → 2013년 32,377톤/일, 약 45% 증가
- 2013년 발생 폐기물 구성 성분 비율
  - 불연성 성분이 약 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불연성 > 가연성 > 재활용품 > 남은 음식류 > 기타

6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 충남지역 행정구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

<표. 2013년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

| 합계  | 합계     | 생활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건설폐기물 | 자정폐기물   |
|-----|--------|-------|-------------|-------|---------|
| 전안시 | 3,326  | 1,077 | 851         | 1,398 | 92,750  |
| 공주시 | 1,099  | 130   | 15          | 953   | 16,221  |
| 보령시 | 4,382  | 111   | 3,780       | 490   | 2,493   |
| 아산시 | 3,053  | 324   | 1,168       | 1,561 | 192,456 |
| 서산시 | 1,321  | 178   | 375         | 767   | 53,734  |
| 논산시 | 1,322  | 176   | 247         | 899   | 6367    |
| 계룡시 | 919    | 47    | 19          | 852   | 607     |
| 당진시 | 21,590 | 150   | 20,229      | 1,210 | 94,947  |
| 금산군 | 338    | 55    | 83          | 198   | 3682    |
| 부여군 | 472    | 75    | 40          | 356   | 1,030   |
| 서천군 | 1,349  | 42    | 1,029       | 277   | 1,996   |
| 청양군 | 459    | 28    | 45          | 385   | 1,642   |
| 홍성군 | 935    | 67    | 104         | 763   | 831     |
| 예산군 | 651    | 48    | 112         | 490   | 4,411   |
| 태안군 | 3,897  | 66    | 3,390       | 440   | 1,803   |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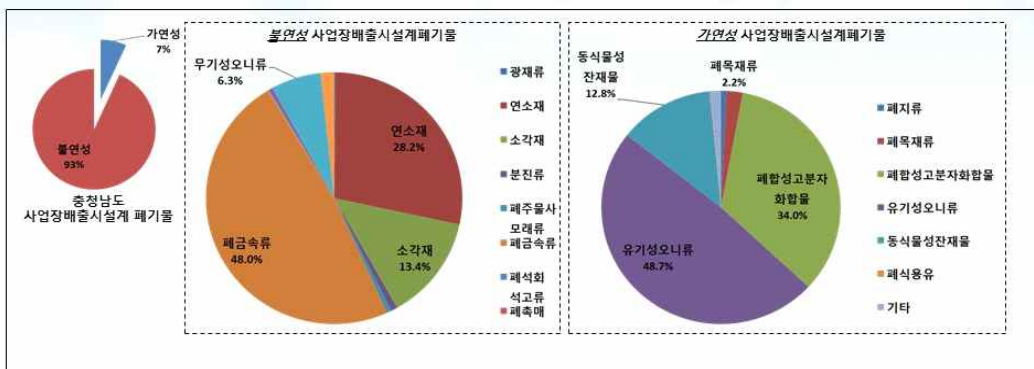


- 15개 시군 중 당진시가 21,590톤/일로 가장 많은 발생량을 나타냄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금속류, 연소재, 소각재 등)의 발생량이 매우 많음
- 보령시, 태안군, 천안시, 아산시가 많은 발생량을 나타냄  
→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발생량이 주요 원인  
→ 천안시의 경우 많은 인구수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7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 충남지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2013년 충청남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구성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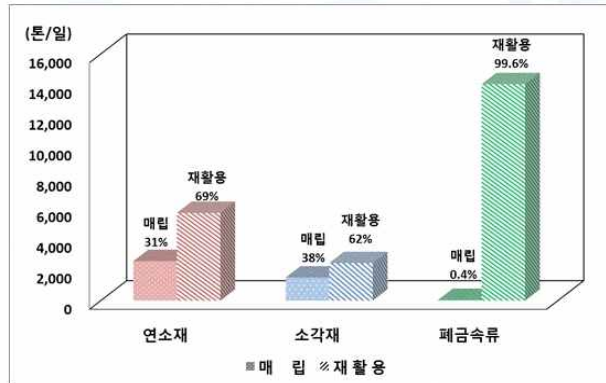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불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함(불연성 93%, 가연성 7%, )
-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폐금속류(48%), 연소재(28%), 소각재(13%)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유기성오니류가 약 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며, 폐합성 고분자화합물(34%)과 동식물성 잔재물(12.8%)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8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충남지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2013년 충청남도 주요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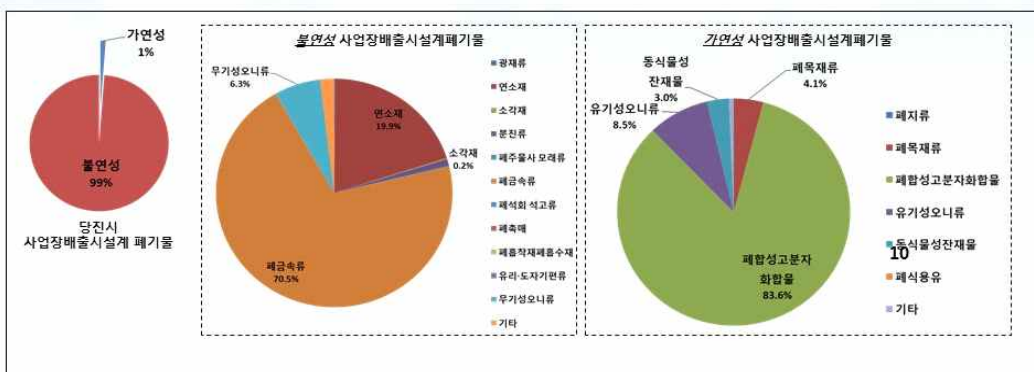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13년 충청남도 발생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31,491톤/일) 중 약 93%이상이 불연성 폐기물
-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 폐금속류, 연소재, 소각재가 약 90%를 차지함
  - 폐금속류 : 14,097톤/일 (48%) → 폐금속류의 경우 99%이상 재활용 처리
  - 연소재 : 8,268톤/일 (28%) → 연소재는 69% 재활용, 나머지 31% 매립 처리
  - 소각재 : 3,945톤/일 (13%) → 소각재는 62% 재활용, 나머지 38%가 매립 처리

9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당진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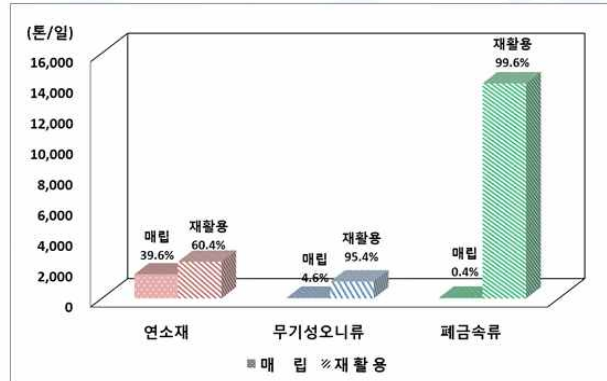
<그림. 2013년 당진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구성성분>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불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함(불연성 99%, 가연성 1%, )
-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당진 제철소 폐금속류(70.5%), 연소재(19.9%), 무기성오니류(6.3%)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약 8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당진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2013년 당진시 주요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출처: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2013년 당진시 발생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20,229톤/일) 중 약 99%가 불연성 폐기물
-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 폐금속류, 연소재, 무기성오니류가 약 96.6%를 차지함
  - 폐금속류: 14,098톤/일 (70%)
  - 연소재: 3,977톤/일 (20%)
  - 무기성오니류: 1,161톤/일 (6%)
- 폐금속류는 99%이상 재활용 처리, 무기성오니류는 95%이상 재활용 처리
- 연소재는 약 40% 매립, 약 60%가 재활용 처리됨

11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충청남도 폐기물 종류별 처리 현황



<그림. 충청남도 최근 5년간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그림.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산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그림.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산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현황>

(출처: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그림. 충청남도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 2013년 기준 충청남도 발생 총 폐기물(생활 + 사업장배출시설계 + 건설) 처리현황  
→ 재활용 (85.8%) > 매립 (11.5%) > 소각 (2.5%)
- 생활폐기물(가정 + 사업장) → 2013년 기준, 재활용 (60.2%) > 소각 (21.2%) > 매립 (18.7%)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2013년 기준, 재활용 (83.2%) > 매립 (14.92%) (4,000~5000톤/일) > 소각 (1.6%)
- 건설폐기물의 경우 대부분(약 99% 이상) 재활용 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남

12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 충남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표.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현황(2013기준)>

| 예산시(3개소) |       |           |          |          |               |
|----------|-------|-----------|----------|----------|---------------|
| 구분       | 운영주체  | 방법<br>폐기물 | 매립용량(m³) | 잔여용량(m³) | 운영기간<br>(년-년) |
| A(매립장)   | 지자체운영 | 소각재       | 85,355   | 85,355   | 2015-2022     |
|          |       |           | 121,740  | 10,371   | 1단계 이후        |
| B(매립장)   | 민간업체  | 일반,<br>지정 | 248,150  | 232,367  | 2012-2023     |
| C(공정)    | 자가처리  | 본진        | 19,238   | 1,677    | 1997-2016     |

| 당진시(2개소) |      |            |            |            |               |
|----------|------|------------|------------|------------|---------------|
| 구분       | 운영주체 | 방법<br>폐기물  | 매립용량(m³)   | 잔여용량(m³)   | 운영기간<br>(년-년) |
| A(공정)    | 자가처리 | 본진,<br>순리차 | 249,739    | 226,391    | 2010-2021     |
|          |      |            |            |            |               |
| B(발전소)   | 자가처리 | 석탄재        | 17,560,000 | 12,341,999 | 1999-2020     |

| 태안군(3개소) |        |           |           |           |               |
|----------|--------|-----------|-----------|-----------|---------------|
| 구분       | 운영주체   | 방법<br>폐기물 | 매립용량(m³)  | 잔여용량(m³)  | 운영기간<br>(년-년) |
| A(매립장)   | 지자체 운영 | 소각재       | 166,000   | 138,788   | 2003-2020     |
|          |        |           |           |           |               |
| B(발전소)   | 자가처리   | 백악재       | 5,311,000 | 1,232,643 | 1993-2058     |
| B(발전소)   | 자가처리   | 백악재       | 3,220,000 | 1,308,826 | 2008-2058     |

| 보령시(3개소) |      |           |            |           |                   |
|----------|------|-----------|------------|-----------|-------------------|
| 구분       | 운영주체 | 방법<br>폐기물 | 매립용량(m³)   | 잔여용량(m³)  | 운영기간<br>(년-년)     |
| A(매립장)   | 민간업체 | 일반,<br>지정 | 1,144,700  | (자정부분)    | 2014-2025<br>(예산) |
|          |      |           |            |           |                   |
| B(발전소)   | 자가처리 | 석탄재       | 13,313,585 | 9,873,805 | 2001-2019         |
| B(발전소)   | 자가처리 | 백악재       | 7,796,342  | 199,703   | 1986-2030         |

<표. 충청남도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               |               | 충청남도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              |                       |                         |
|------------------|---------------|---------------|------------------|--------------|-----------------------|-------------------------|
| 소재지              | 매립 면적 (m²)    |               | 소재지              | 시설용량 (톤/일)   |                       |                         |
|                  | 지자체<br>(16개소) | 자가처리<br>(9개소) |                  | 지자체<br>(9개소) | 자가처리<br>(생물)<br>(3개소) | 자가처리<br>(사업장)<br>(11개소) |
| 천안시              | 2,120,837     | -             | 천안시              | 200          | 4                     | 2                       |
| 공주시              | 787,260       | -             | 공주시              | -            | -                     | 12                      |
| 보령시              | 739,056       | 1,144,700     | 보령시              | -            | -                     | 5                       |
|                  |               | 13,313,585    |                  | -            | -                     | 2                       |
|                  |               | 7,796,342     |                  | -            | -                     | -                       |
| 아산시              | 85,355        | 248,150       | 아산시              | 50           | -                     | -                       |
|                  |               | 19,238        |                  | 50           | 2                     | -                       |
| 서산시              | 182,129       | -             | 서산시              | 200          | -                     | 3                       |
|                  | 124,800       | -             | 아산시              | -            | -                     | 1                       |
| 논산시              | 600,894       | -             | 논산시              | 50           | -                     | 4                       |
| 계룡시              | 190,000       | -             | 계룡시              | -            | -                     | 2                       |
| 당진시              | 683,887       | 249,739       | 당진시              | -            | -                     | 1                       |
|                  |               | 17,560,000    |                  | -            | -                     | 7                       |
| 금산군              | 148,937       | -             | 금산군              | -            | -                     | -                       |
| 부여군              | 539,100       | -             | 서천군              | 10           | -                     | -                       |
| 서천군              | 292,400       | -             | 청양군              | 15           | -                     | -                       |
| 청양군              | 101,000       | -             | 홍성군              | -            | -                     | 1                       |
| 홍성군              | 338,498       | -             | 예산군              | 40           | -                     | -                       |
| 예산군              | 326,351       | -             | 태안군              | 45           | -                     | -                       |
| 태안군              | 166,000       | 5,311,000     | 계룡시              | -            | 25                    | -                       |
|                  |               | 3,220,000     |                  |              |                       |                         |

(출처 :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소각시설 12개소 (지자체 운영 : 9개소, 자가처리업체 : 14개소)  
→ 대체로 화력자식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의 200톤/일의 규모를 제외하고 대체로 시설용량이 작음
- 매립시설 22개소 (지자체 운영 : 16개소, 자가처리업체 : 9개소)
-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은 태안, 보령, 아산, 당진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용으로 활용됨

13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 발생 및 처리 특성 요약

- 2009년 대비 2013년 충남지역 폐기물 발생량 약 31% 이상 증가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가 주요 원인(2009년 대비 2013년 약 45% 증가)
-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천안/아산시에서 주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함  
→ 주로 해안지역(당진, 보령, 태안, 서천)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가 주요 원인  
→ 천안 아산시의 경우 많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가 주요 원인
- 충남 사업장 폐기물 중 발생량 중 폐금속류, 연소재(석탄재), 소각재가 대부분 차지  
→ 당진시 폐금속류의 발생량이 많지만, 대부분 재활용 되고 있음  
→ 석탄재, 연소재의 경우 재활용 이외 매립량이 많음  
→ 충남 사업장 폐기물 하루 매립량은 4000~5000톤/일 (약 1,500,000톤~1,800,000톤/년)  
→ 석탄재는 발전소 회사장 매립, 연소재의 바닥재의 경우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 폐금속류 재활용은 재활용. 따라서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량은 매우 적음
- 충남지역 폐기물 매립시설은 2013년 기준 22개소가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설 : 15개소, 자가처리업체 : 7개소  
→ 자가처리업체 매립시설은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 목적으로 활용됨(당진, 보령, 태안)

14

## 2.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매립지 조성 전경



15

## 3.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충남지역 사업장 폐기물 추가 매립지 과연 필요한가?

-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과 현황에 대한 추가 상세 분석이 필요함
  - 충남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잠재적 미래이슈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
- 아래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cological), 정책적(Political) 측면 고려시 **수요 타당성이 부족 예상**



16

### 3.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그렇다면 왜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 아직까지 매립처리 단가(약 3만원~8만원/톤)가 소각 처리 단가(10만원~20만원), 재활용 처리 단가(10~20만원/톤)보다 낮아 폐기를 배출자의 경우 가급적 처리단가가 낮은 매립을 선호함  
- 잠재적 수요자가 있으니, 공급자가 필요함
- 특히 수도권외의 매립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근 충청권 지역에 매립지 조성될 경우, 매립지 사업자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득 가능성이 있음
- 매립지 사업자의 경우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비용**(법적 기간 30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법적, 제도적 미흡으로 미이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상대적 책임이 약하기 때문에 매립지 조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폐기를 매립을 통한 반입수수료 수입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

17

### 3.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폐기물의 톤당 처리 단가 예시 (2015, 환경부 연구과제, 충남대)

| 폐기물 종류              | 처리방법 | 실태조사 수행 결과 | 문헌 및 통계자료  | Allbaro system 내부자료 |
|---------------------|------|------------|------------|---------------------|
| 생활폐기물               | 매립   | 97,479     | 66,700     | 132,000             |
|                     | 소각   | 153,997    | 160,621    | 176,000             |
|                     | 재활용  | 283,355    | 205,868    | 137,000             |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가연성) | 매립   | 26,348     | (해당 자료 없음) | 75,000              |
|                     | 소각   | 197,253    | (해당 자료 없음) | 127,000             |
|                     | 재활용  | (문헌자료 활용)  | 163,251    | 87,000              |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불연성) | 매립   | 36,000     | (해당 자료 없음) | 47,000              |
|                     | 재활용  | (문헌자료 활용)  | 156,043    | 28,000              |
| 건설폐기물               | 매립   | 63,429     | (해당 자료 없음) | 49,000              |
|                     | 소각   | 244,839    | (해당 자료 없음) | 200,000             |
|                     | 재활용  | (문헌자료 활용)  | 127,262    | 18,000              |

18

## 4.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매립지 사후 관리 법적 기준-폐기물관리법

1. 사용 종료 또는 폐쇄신고 후 30년 이내 사후 관리 의무를 갖고 있음
2. 사후 관리 항목
  - 빗물 배제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함
  - 침출수 관리 (배출허용기준 이내 처리, 침출수 분기 1회 조사, 침출수 수위 2m 이내)
  - 지하수 수질 조사 (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 1회 이상 조사, 3개 검사점 지하수 수질 검사)
  - 발생 가스 관리 (매립 종료 후 5년 분기당 1회 조사, 5년 이후 연 1회 이상 조사, 발생가스는 포집 후 소각처리, 발전, 연료 등으로 회수)
  -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물리적 압축과 분해에 따른 침하로 매립시설 사면, 최종 복토층 손상 방지)
  - 지표수 수질 조사(하천, 계곡 인접인 경우)
  - 토양오염 조사 (매립지 인접 토양 4개 이상 지점)
  - 방역 실시 (파리, 모기, 해충 방역)
3. 주변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사용 종료 신고 후 5년 마다 작성 제출)

19

## 4.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최근 국내 매립지 침출수 누출 사례

| 매립지                   | 시기       | 개요                                                                                    |
|-----------------------|----------|---------------------------------------------------------------------------------------|
| 경남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 2009년 7월 | 침출수가 누출돼 고성만 해양으로 방출, 한국환경공단 진단결과 차수막 파손은 확인됐으나 파손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매립장 조기 폐쇄하고 새로운 매립장 준공 |
| 광명 지정폐기물매립장           | 2009년 8월 | 제방 일부가 붕괴돼 침출수 다량 누출                                                                  |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2차)    | 2010년 7월 | 제방 근처 도로상으로 침출수가 누출돼 마을 소하천 오염, 침출수 누출방지 시스템 측정 후 누출위치 보수                             |
| 경북 구미시 지정폐기물 매립장      | 2011년 7월 | 침출수 인근 저수지로 누출돼 물고기 집단폐사-차수막 이음새 파손돼 침출수 누출                                           |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 2012년    | 에어돔이 붕괴 후 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 누출                                                          |
| 인천청라지구 신도시공사장 폐기물 매립지 | 2012년    | 개발 과정에서 침출수 누출, 침출수 처리장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
| 경북 포항시 폐기물매립장         |          | 시민모임측, 침출수 누출은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미비와 외부 용벽에 발생한 균열때문이라고 주장                                 |
| 울산광역시 산업폐기물업체         |          | 최종처리업체, 사측이 파손된 매립장 바닥 차수막을 2-3년간 방치해 침출수 누출돼 토양 및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                  |
| 제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        | 2014년    | 매립장내 전용하수관 연결되지 않아 발생                                                                 |
| 경주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 2015년    | 매립지 사면 침출수 누출로 인한 매립지 운영 가동 중단 (보수 중)                                                 |

(출처: 환경일보, 2014년 8월 7일자)

20

## 4.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매립지 사후 이행 보증금-폐기물관리법

1. 사용 종료 신고를 고의적으로 미루어 매립지 사후 관리 부실 사례가 있음. 부적격 사업자의 문제점 대두
2. 환경부장관은 침출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3. 한국환경공단 사후 관리 업무 대행하고 있음
4. 침출수 누출 예방을 위한 사전 누출관리 시스템 마련-수질 TMS, 굴뚝 TMS와 같이 매립장의 차수막에 대해서도 차수막 파손 시 침출수 누출 시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5. 매립지의 침출수 누출은 지하에서 일어나기 현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21

## 4.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재활용 및 산업단지 소각시설 활용 필요

1. 매립의 경우 사후 관리 비용 증가와 환경적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 후 폐열 회수 유도가 바람직함.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는 재활용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산업단지 소각장의 폐기물 물량 부족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최정석, 인주산업단지 소각시설 활용방안, 2013)

| 행정구역 | 단지명      | 설치년도 | 용량<br>(톤/일) | 운영실태                 |                       | 현재 이용 상황                  |
|------|----------|------|-------------|----------------------|-----------------------|---------------------------|
|      |          |      |             | 미가동 및 폐쇄일            | 사유                    |                           |
| 충남천안 | 천안제3산업단지 | 2000 | 20          | 부분가동 중<br>2007. 12폐쇄 | 물량부족<br>시설노후<br>보수비과다 | 용도폐지 후<br>산업용지로 매각협상<br>中 |
| 충북음성 | 대풍산업단지   | 1996 | 12          | 시운전후<br>2010. 12폐쇄   | 물량부족<br>시설노후          | 용도폐지 후<br>산업용지로 매각완료      |
| 충북음성 | 금왕산업단지   | 1998 | 12          | 시운전후<br>2004. 11 중지  | 물량부족                  | 용도폐지 후<br>매각예정            |
| 부산기장 | 정관산업단지   | 2008 | 50          | 시운전후<br>2008. 12 중지  | 물량부족                  | 2014년까지 유보                |
| 대구달성 | 달성2차산업단지 | 2008 | 70          | 시운전후<br>2008. 7 중지   | 물량부족                  | 2014년까지 유보                |

22

## 5. 요약 및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충남도 사업장폐기물의 특성 및 매립지 수요 상세 분석이 필요함

- 충남도의 지역 여건과 폐기물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수요 분석이 필요함
- 미래 예측에 근거한 수요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사업자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막아야 함

2

충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도차원 통합 관리 필요

- 시군 단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대응에 한계
- 충남도 전체 매립에 의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려해야 함
- 폐기물 정책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 (기존 국가/지역 산단 소각시설 활용) 유도 필요

3

매립지 사업자의 자격 기준 관리 강화 필요

- 부적격 사업자의 관리 강화
- 매립지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제제, 제도적 장치, 조례 제정 필요

23

## 5. 요약 및 결론

매립지 수요?



충남지역 특성 반영

수요 미래 예측에 근거한  
매립지 조성 타당성 검증  
필요.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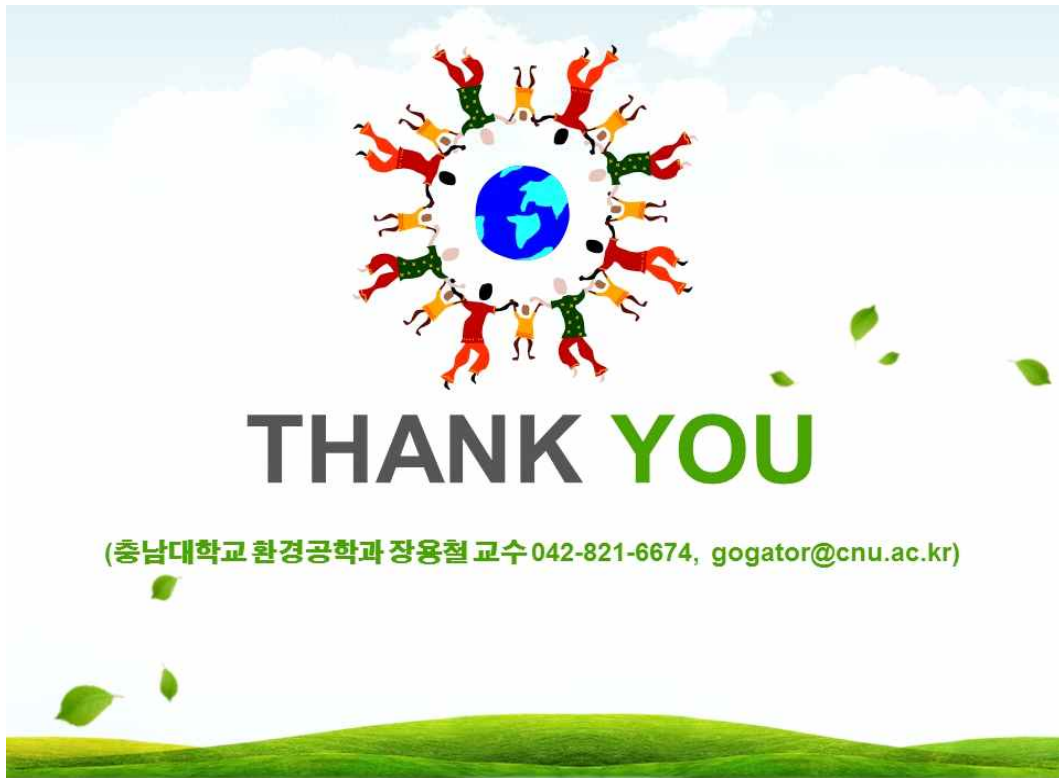
충남 환경 보전 정책 강화

'환경보전'을 최우선 정책 추진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  
시군과 협력 공조 필요

지역 주민 참여 및 소통

지역주민과 갈등 예방을 위한 참여  
소통, '지역환경' 보존 요구

24



## 6. 5차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 일 시 : 2015. 11. 26(목) 16:00

○ 장 소 : 충청남도 의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2명, 관계자 2명)

○ 안 전

- 의원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
- 의원연구모임 성과 평가 보고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향후 발전방안 논의

○ 회의결과

1) 의원연구모임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 연구모임 창립대회, 공공갈등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남도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해결 방안 연구 사례 등 주요 활동 상황이 보고서에 포함 되도록 협의

2) 의원연구모임 성과 평가 보고

- 道 관계관, 전문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道의회 역량강화 성과 창출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실태조사 및 분류를 통한 갈등유발 요인 파악, 확인을 통한 갈등의 전개상황 분석 및 예측으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원칙 확립 도모
- 공공갈등의 구조적, 행위적, 환경적 변화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주도의 제도 확립을 위한 현장관리기법의 도출
- 갈등예방·조정 역량 강화 및 갈등이슈 논의와 대안 모색
- 갈등관리 현장 지원을 통해 실천적 갈등 관리 구현

3) 추후 활동 방향 토의

- 의원 연구모임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방향 설정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회성 연구모임이 아닌 지속적인 모임으로 유지 필요 공감

## **7.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보고서 발간**

- 사업개요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사업내용 : 연구모임,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등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고 2015년 충청남도 사업 계획 반영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 발간일 : 2013년 12월중

### Ⅲ.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결과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 I. 서론

## 1. 연구배경

- 중앙정부 수준의 갈등발생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성 증대
  - 최근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국가단위 정책추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함
  - 이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영역내에서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되고 있음
- 갈등조정 및 완화를 위한 지역사례의 심층분석 연구 필요
  -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갈등은 비용적 편익이 발생하는 문제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어 갈등이 심화중임
  - 비선호 시설 입지와 관련한 지역사례의 심층 연구가 요구됨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험적 사례의 축적 필요
  -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 경쟁원리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건강·환경등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경험적 사례의 분석 및 축적이 필요함

## 2. 연구목적

-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의 흐름 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교육 및 관리의 효율성, 효과성을 담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역갈등의 이해관계자들간의 문제의 합리적 해결원칙 제시
  - 갈등사례에 대한 집합적 분석과 이해를 위한 근거 필요 공감
  - 충남도 정책추진과 새로운 정책의제의 발굴을 위한 관점 제시 희망

- 갈등관리를 위한 현장연구 및 지속적인 DB화
  - 충청남도 공공갈등 이슈에 대한 현장연구
  - 지방정부 차원의 갈등이슈 흐름 분석과 해결과정 수용

### 3. 연구방법 및 내용

- 국내 현황파악
  - 국내외 연구문헌 조사
  - 폐기물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 실시
  -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례 중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른 정책갈등 사례를 파악
- 충청남도 현황 파악
  - 현안진단과 시사점을 통해 충남도에서 필요한 구조적 특성을 분류
  - 충남도의 향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책적 기술 구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함

## II.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입지 갈등 사례

### 1. 사례의 개요

#### ○ 비선회시설의 입지

- 비선회시설은 공공재 중에서 시설의 특정상 입지 주변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큼
- 입지 편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수용이 거부되는 특성을 보임

#### ○ 정부간 갈등

-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자გი지역의 이익을 중요시하면서 갈등문제가 대두됨
- 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합리적 근거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은산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중임

## 2. 입지갈등 지역

### 1) 서산시

#### ○ 입지개요

- 위치 : 서산시 장동 470-1 일원
- 규모 : 19만 m<sup>2</sup>
- 유형 : 돔형식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시설(소각재, 분진, 오니 등 지정 폐기물 처리)

### ○ 추진경과

- '13. 6. 25. : 오산지역 8개통장, 주민대표 매립시설 견학
- '13. 7. 09. : 자체주민설명회 개최(예정부지 인근부락민)
- '13. 7. 19. : 금강청에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접수(당일철회)
- '13. 7. 22. :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 '13. 8. 02. : 반대위 금강청에 반대진정서 제출
- '13. 8. 13. : 석남동 단체장 등 사업체 방문(반대위 의견전달)
- '13. 8. 16. : 반대대책위원회, 시장 면담
- '13. 8. 25. : 부시장님, 사업주와 면담
- '13. 9. 05. : 서산시, 사업반대입장 표명(방송 및 지역언론)

### ○ 이해관계자

- 서산시, 지역주민 ↔ 민간업체

### ○ 주요 쟁점

- 주민 : 청정농업지역 및 철새도래지 훼손 우려, 지하수오염 등으로 지역주민 건강 저해
- 업체 : 개발이 어려운 지역개발로, 주민에게 도움됨, 보상, 기금 및 시설설치로 지역환원 계획

## 2) 청양군

### ○ 입지개요

- 위치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산8-1 일원
- 규모 : 약 6만㎡
- 유형 : 에어돔 형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
- 매립면적 3만 5400㎡에 일 105만 6,196톤의 폐기물 처리

### ○ 추진경과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 구성, 반대집회 추진
- 폐기물 매립장 부적정 행정소송 제기 (사업자→대전지방법원)
-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 (위원장 이영기 변호사, 9명)
- '13. 8. 14 :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반대 대책위 설립
- '13. 12. 12 : 주민감사청구 (지역주민→道 감사위원회)
- '14. 6 . 22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제기에 따른 굴착조사
- '14. 8. 25 :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 '14. 10. 27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 이해관계자

- 청양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 주요 쟁점

- 주민 : 현재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폐쇄, 신규 매립장 설치 불가
- 업체 : 적법하게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장 설치강행

## 3) 부여군

### ○ 입지개요

- 위치 :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산 25-1 일원
- 규모 : 81만 1,840㎡
- 유형 : 밀폐형 돔형식, 폐기물처리장 4개소
-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 사업장 폐기물 매립

○ 추진경과

- '12. 6 :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 및 주민 설득 작업 시작
- '12. 8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 '12. 1~14. 12 : 사업예정지 집회와 시위, 반대집회
- '13. 5, '13. 8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신고  
(부여군 2회 모두 반려)
- '14. 10 : 3차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
- '15. 03 : 3차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진행중)
- '15. 2, '15. 4 : 사업자, 설치 협조요청 문서발송(은산면장)

○ 이해관계자

- 부여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 쟁점

- 주민 : 대상지역은 상습 재난지역으로 환경재앙우려, 친환경 농업이미지  
및 백제 왕도이미지 훼손, 역경제 붕괴 및 세계유산등재에 악영향
- 업체 : 법령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사업 행위

## 4) 예산군

○ 입지개요

- 위치 : 예산군 대술면 궤곡리 산 57번지 일대
- 규모 : 9만 3,511㎡
- 유형 :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매립(처리)시설
- 소각재 및 연소재, 오폐수, 폐석면(지정폐기물 외) 등

○ 추진경과

- '13. 9. 11 : 사업계획서 접수
- '13. 9. 13 : 매립시설 설계(기술) 및 환경조사서 검토 의뢰
- '13. 9. 16 : 군수, 부군수와 주민대화(반대의견 전달)
- '13. 10. 16 :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13. 10. 17 : 심의결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 '14. 1. 21 : 행정소송 접수(대전지방법원)
- '14. 12. 04: 판결선고(원고 승소)
- '14. 12. 22 : 항소장 제출
- '2015년 현재 2심 진행 중

○ 이해관계자

- 예산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 쟁점

- 주민 : 비오톱지도 용역결과 1등급, 절대보전지역, 예산군의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부적합, 주민 집단민원 및 상수원, 지하수 오염 우려
- 업체 : 부적합처분통보는 비합리적, 주관적 처분임

## 5) 서천군

○ 입지개요

- 위치 : 서천군 중천면 화산리 산 14-9
- 규모 : 부지 2만 3,010㎡
- 유형 : 일반폐기물 매립(처리)시설

○ 추진경과

- 2007년~2009년 진행현황 (1차 소송)
  - '08. 11. 26. : 1심 판결선고 ☞ 원고패
  - '09. 09. 17. : 2심 판결선고 ☞ 원고패
  - '09. 12. 10. : 3심 판결선고 ☞ 원고패소기각
- 2011년~2014년 10월 (2차 소송)
  - '13. 07. 17. : 1심 판결선고 ☞ 원고승
  - '14. 05. 29. : 2심 판결선고 ☞ 원고패
  - '14. 10. 15. : 3심 판결선고 ☞ 원고패소기각
- 2014년 10월 15일 이후 (3차 사업계획서 제출)

○ 이해관계자

- 서천군, 지역주민 ↔ 민간업체

○ 주요 쟁점

- 주민 : 매립폐기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에 대한 우려, 어메니티 생태도시의 이미지훼손

### 3. 부여 폐기물매립장 설치 사례분석

#### 1) 사업개요

- 업체명 : (주)한맥
- 위치 : 은산면 대양리 산25-1번지 등 25필지
- 매수토지 : 811,840㎡(245,571평)

- 총사업면적 : 421,206㎡(127,638평)
  - 최종매립지 조성면적 : 130,096㎡(39,423평)
  - 중간처리 시설 면적( 46,343㎡(14,043평)
  - 기타면적 : 244,767㎡(74,191평)
- 시설현황(예정) :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 지정폐기물
- 매립용량 : 7,895,250톤(30년 운영계획)

## 2) 주요 진행경과

- 진행경과
- 2012. 6 :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
  - 2012. 8 :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 2013. 3 : 반대 대책위 임원 및 주민을 업무방해로 37명 고소(고발)
  - 2013. 4 : 민사소송 제기(16명, 135,000천원)
  - 2013. 5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1차)
  - 2013. 5 :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굴착신고 신고서 반려(1차)
  - 2013. 5 : 환경부에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공문 발송
  - 2013. 7 : 환경부장관 부여방문시 매립시설 설치 반대 군정 건의
  - 2013. 8 : 환경부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설치제한 지역 : 지류 500m → 1km)
  - 2013. 8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2차)
  - 2013. 10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2차)
  - 2013. 10 : 사업반대 청원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 2013. 12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16명)
- 2014. 1 :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반려 처분 이의 신청
- 2014. 1 : 산지 일시 사용신고 반려처분 적합 통보
- 2014. 10 :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요청(자진취하)
- 2014. 10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3차)
- 2014. 12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반려(3차)
- 2015. 3 :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제기

### 3) 갈등요인과 유형

- 부여군 은산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갈등임
- 비선호시설(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함

### 4) 갈등분석결과

- 핵심쟁점 분석
  - 폐기물 매립장 설치
  - 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있음
  - 폐기물 매립장은 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많은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문제로 확산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임
  - 은산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입지와 사업허가에 대한 정책결정·집행주체는 환경부이며, 결정·집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이익의 고려보다는 전체적 입장에서 기술적·행정적 관점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특성과 문제점을 인지한 부여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업체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중임

## ○ 하위쟁점 분석

### (1) 정주권·재산권 침해

- 심층면접 결과 현재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의 혐오성과 지역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편임
- 부여 은산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형의 자연마을임
- 부정적인 지역이미지의 형성은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부동산 가치와 생산물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음
- 은산면, 더 나아가서는 부여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시설의 입지에 따른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에의 영향등의 부정적인 변화를 우려함
- 주민들은 정주권·재산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중임

### (2) 지역적 편익 불균형

- 은산면에 설치예정인 폐기물 매립장은 타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임
- 폐기물 매립장과 입지로 인한 이익은 업체와 타지역의 오염원 배출자가 누리며, 소음·악취·건강 문제·자연훼손은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함
- 심층면접 결과 폐기물 매립장이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며, 기업체의 사익을 위한

시설이며, 또한 지역내 폐기물 처리가 아닌 타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데 반발감을 나타냄

- 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합리적 근거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은산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중임

### (3)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불신

- 기술적 요인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지역의 안정성이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기인한 갈등의 유발요인임
-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안정성, 관리·운영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이 해당됨
-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설치예정인 매립장이 공공폐기물매립장이 아니며, 민간에서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로써, 사익을 위한 기술적 안정성에 우려감을 나타냄
- 또한 수익위주의 운영중 이로 인한 관리소홀과 업체의 도산 등 관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기술적 안정성 또한 갈등요인으로 작용중임

#### ※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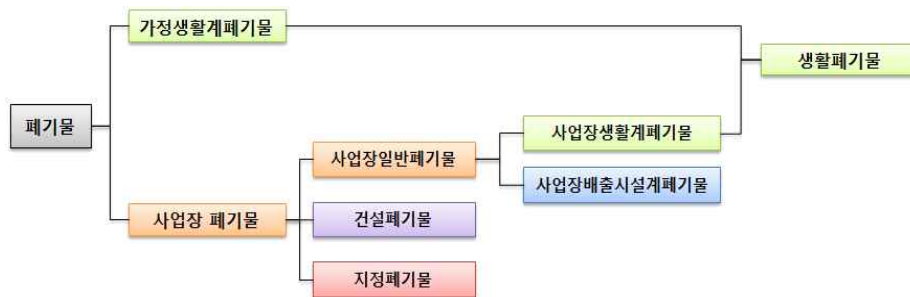
- 2006년 1월 지정·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민간사업주의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의지 상실로 문제가 불어지고 있으며, 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시설내 침출수 처리를 환경부·제천시가 처리하면서 환경오염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나타남

### Ⅲ.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1.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1) 국내 폐기물의 분류 체계

폐기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발생원 역시 다양하고 많다. 폐기물 배출 후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도 중간처리 폐기물이 발생한다. 국내 폐기물의 분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또는 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다시 가정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국내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국내 폐기물 분류 체계

##### 2)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

환경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04~2013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사업장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2004년 기준 261,659톤/일에서 2013년 기준 399,498톤/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건설폐기물이 188,538톤/일(47.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49,815톤/일(37.5%), 지정폐기물 12,471톤/일(3.1%), 생활폐기물 48,728톤/일(12.2%)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도별 총 폐기물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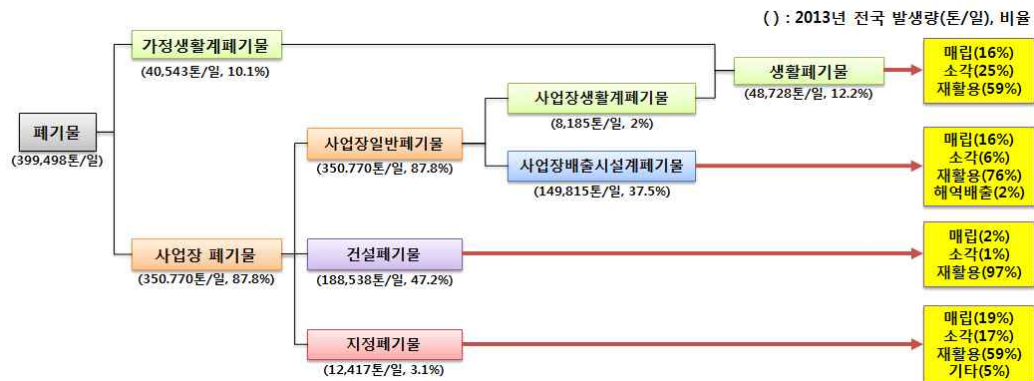
(단위 : 톤/일, %)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 계                 | 311,666<br>(100)  | 304,358<br>(100)  | 328,954<br>(100)  | 346,669<br>(100)  | 368,890<br>(100)  | 366,921<br>(100)  | 374,642<br>(100)  | 383,333<br>(100)  | 394,510<br>(100)  | 399,498<br>(100)  |
| 생활폐기물               | 50,007<br>(16.0)  | 48,398<br>(15.9)  | 48,844<br>(14.8)  | 50,346<br>(14.5)  | 52,072<br>(14.1)  | 50,906<br>(13.9)  | 49,159<br>(13.1)  | 48,934<br>(12.8)  | 48,990<br>(12.4)  | 48,728<br>(12.2)  |
| 가정<br>생활계<br>폐기물    | 41,578<br>(13.3)  | 40,567<br>(13.3)  | 40,900<br>(12.4)  | 42,571<br>(12.3)  | 42,269<br>(11.5)  | 42,086<br>(11.5)  | 40,920<br>(10.9)  | 40,942<br>(10.7)  | 41,644<br>(10.6)  | 40,543<br>(10.1)  |
| 사업장<br>생활계<br>폐기물   | 8,429<br>(2.7)    | 7,832<br>(2.6)    | 7,944<br>(2.4)    | 7,775<br>(2.2)    | 9,803<br>(2.7)    | 8,820<br>(2.4)    | 8,239<br>(2.2)    | 7,992<br>(2.1)    | 7,346<br>(1.9)    | 8,185<br>(2.0)    |
| 사업장폐기물              | 261,659<br>(84.0) | 255,960<br>(84.1) | 280,110<br>(85.2) | 296,323<br>(85.5) | 316,818<br>(85.9) | 316,015<br>(86.1) | 325,483<br>(86.9) | 334,399<br>(87.2) | 345,520<br>(87.6) | 350,770<br>(87.8) |
| 사업장<br>배출시설계<br>폐기물 | 105,018<br>(33.7) | 112,419<br>(36.9) | 101,099<br>(30.7) | 114,807<br>(33.1) | 130,777<br>(35.5) | 123,604<br>(33.7) | 137,875<br>(36.8) | 137,961<br>(36.0) | 146,390<br>(37.1) | 149,815<br>(37.5) |
| 건설폐기물               | 148,489<br>(47.6) | 134,906<br>(44.3) | 168,985<br>(51.4) | 172,005<br>(49.6) | 176,447<br>(47.8) | 183,351<br>(50.0) | 178,120<br>(47.5) | 186,417<br>(48.6) | 186,629<br>(47.3) | 188,538<br>(47.2) |
| 지정폐기물               | 8,152<br>(2.6)    | 8,635<br>(2.8)    | 10,026<br>(3.0)   | 9,511<br>(2.7)    | 9,594<br>(2.5)    | 9,060<br>(2.5)    | 9,488<br>(2.5)    | 10,021<br>(2.6)   | 12,501<br>(3.2)   | 12,417<br>(3.1)   |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5-2014)

### 3) 국내 폐기물의 처리 현황

국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비율이 약 59%로 가장 높았으며, 소각 처리 비율이 약 25%, 매립 처분은 약 16%로 나타났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한 재활용 비율이 약 76%로 가장 높았으며, 매립, 소각, 해역배출 비율이 각각 16%, 6%, 2%를 차지하였다. 국내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매립과 소각은 각각 2%, 1%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2].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폐기물 발생량 중 약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97% 이상 재활용되고 있어 국내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비교적 높다. 또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종류별 처리방법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폐기물 종류별로 보다 세부적인 처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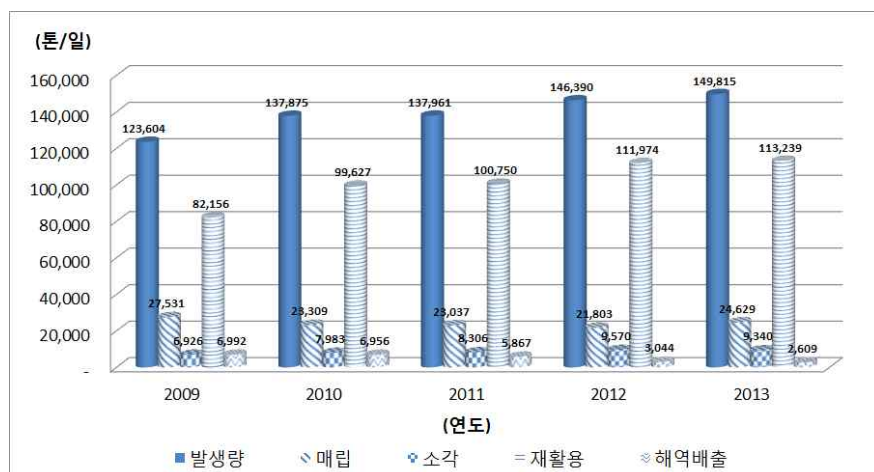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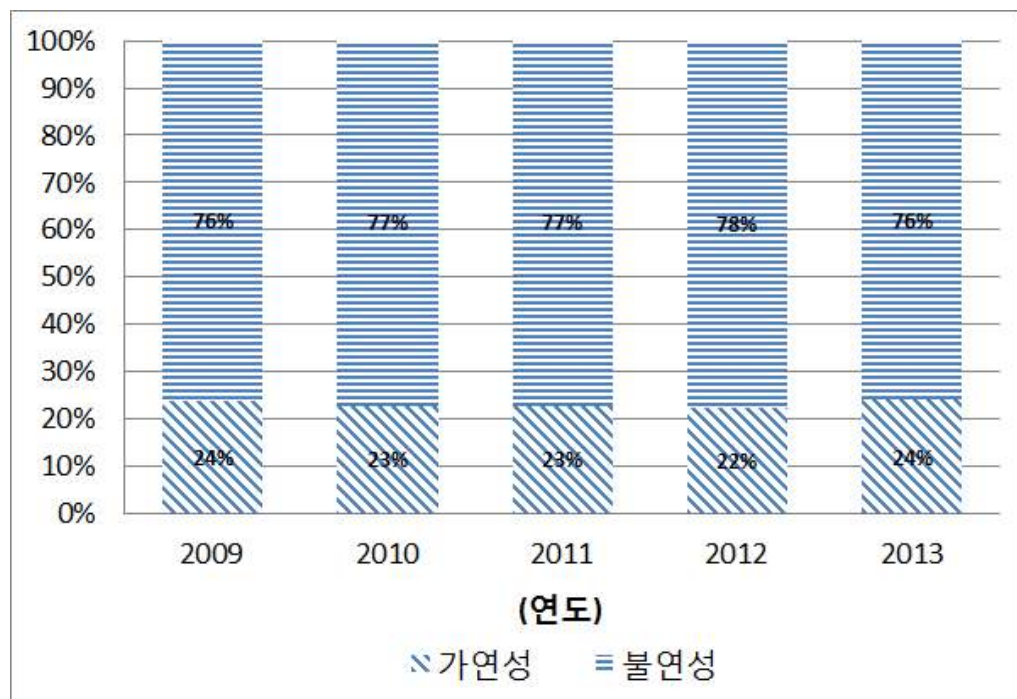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다음으로 높은 발생량을 나타내고,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149,815톤/일의 발생량을 나타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발생원에 따른 성상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상별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연성 성분 비율이 높고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과 보관을 금지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연도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현황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성분이 약 24%, 불연성 성분이 약 76%로 나타났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가연성성분은 폐지류, 폐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기성오니류, 동식물성 잔재물, 폐식용유 등이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연성 성분으로는 광재류, 연소재, 소각재, 분진류, 무기성오니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4].



(그림 4) 연도별 사업장일반폐기물 가연성 및 불연성 비율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재활용이 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매립 16%, 소각 6%, 해역배출 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연성 성분 처리량 중에서는 재활용이 약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각 약 25%, 해역배출 약 7%, 매립 약 11% 순으로 높았다.

〈표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현황(2013년)

| 폐기물 종류 |                   | 발생량<br>(톤/일) | 처리방법(톤/일) |        |         |        |       |
|--------|-------------------|--------------|-----------|--------|---------|--------|-------|
|        |                   |              | 매립        | 소각     | 재활용     | 해역배출   |       |
| 총계     |                   | 149,815      | 24,629    | 9,340  | 113,239 | 2,609  |       |
| 가연성    | 소계                |              | 35,911    | 3,797  | 9,004   | 20,684 | 2,427 |
|        | 폐지류               |              | 128       | -      | 7       | 121    | -     |
|        | 폐목재류              |              | 2,990     | -      | 141     | 2,840  | 10    |
|        | 폐합성<br>고분자<br>화합물 | 폐섬유류         | 227       | 9      | 67      | 150    | -     |
|        |                   | 폐합성수지        | 9,157     | 191    | 3,177   | 5,783  | 5     |
|        |                   | 폐합성고무        | 382       | 3      | 70      | 309    | -     |
|        |                   | 폐피혁          | 38        | -      | -       | 37     | -     |
|        | 유기성<br>오니류        | 폐수처리오니       | 9,336     | 894    | 2,556   | 3,550  | 2,337 |
|        |                   | 공정오니         | 1,281     | 199    | 274     | 757    | 52    |
|        |                   | 정수처리오니       | 130       | 7      | 1       | 122    | -     |
|        |                   | 하수처리오니       | 6,091     | 1,441  | 1,987   | 2,653  | 10    |
|        | 동식물성잔재물           |              | 3,369     | 154    | 232     | 2,972  | 12    |
|        | 폐식용유              |              | 31        | -      | -       | 31     | -     |
|        | 기타                |              | 2,752     | 899    | 493     | 1,359  | 1     |
| 불연성    | 소계                |              | 113,904   | 20,832 | 336     | 92,555 | 182   |
|        | 광재류               |              | 7,478     | 1,206  | -       | 6,272  | -     |
|        | 연소재               |              | 22,398    | 4,087  | 9       | 18,302 | -     |
|        | 소각재               |              | 8,134     | 4,902  | 108     | 3,124  | -     |
|        | 분진류               |              | 4,495     | 931    | 2       | 3,563  | -     |
|        | 폐주물사모래류           |              | 5,187     | 1,392  | 4       | 3,791  | -     |
|        | 폐금속류              |              | 27,680    | 149    | 2       | 27,528 | -     |
|        | 폐석회·석고류           |              | 1,820     | 262    | -       | 1,559  | -     |
|        | 폐촉매               |              | 150       | 36     | -       | 114    | -     |
|        | 폐흡착재·폐흡수제         |              | 229       | 98     | 4       | 127    | -     |
|        | 유리·도자기편류          |              | 1,338     | 186    | 1       | 1,151  | -     |
|        | 무기성<br>오니류        | 폐수처리오니       | 8,103     | 2,038  | 160     | 5,759  | 146   |
|        |                   | 공정오니         | 5,108     | 810    | 19      | 4,251  | 28    |
|        |                   | 정수처리오니       | 667       | 187    | -       | 479    | -     |
|        |                   | 하수처리오니       | 605       | 256    | 2       | 347    | -     |
|        | 기타                |              | 20,513    | 4,294  | 24      | 16,187 | 7     |

건설폐기물은 최근 5년간 17.5만 톤/일 내외로 큰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전체 폐기물 중 가장 큰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종류별로는 2013년 기준 폐콘크리트가 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19%), 혼합건설폐기물(13%) 등의 순으로 발생량을 나타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은 불연성으로 98% 이상이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통계자료와는 달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이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다.



〔그림 5〕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3〉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2013년)

| 건설폐기물의 종류             |         |            | 발생량 (톤/일) | 비율 (%) |
|-----------------------|---------|------------|-----------|--------|
| 총계                    |         |            | 183,538   | 100    |
| 불연성                   | 소계      |            | 156,504   | 85.3   |
|                       | 건설폐재류   | 페콘크리트      | 111,653   | 60.8   |
|                       |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35,398    | 19.3   |
|                       |         | 페벽돌        | 2,262     | 1.2    |
|                       |         | 페블럭        | 983       | 0.5    |
|                       |         | 폐기와        | 36        | 0.0    |
|                       |         | 건설폐토석      | 5,067     | 2.8    |
|                       |         | 건설오니       | 1,052     | 0.6    |
|                       |         | 폐금속류       | -         | -      |
|                       |         | 폐유리        | 6         | 0.0    |
|                       |         | 페타일 및 폐도자기 | 47        | 0.0    |
|                       |         | 가연성        | 소계        |        |
| 폐목재                   |         |            | 704       | 0.4    |
| 폐합성수지                 |         |            | 1,695     | 0.9    |
| 폐섬유                   |         |            | 17        | 0.0    |
| 페벽지                   |         |            | 2         | 0.0    |
| 가연성<br>·<br>불연성<br>혼합 | 소계      |            | 24533     | 13.4   |
|                       | 페보드류    |            | 196       | 0.1    |
|                       | 페판넬     |            | 3         | 0.0    |
|                       | 혼합건설폐기물 |            | 24,334    | 13.3   |
| 기타                    |         |            | 85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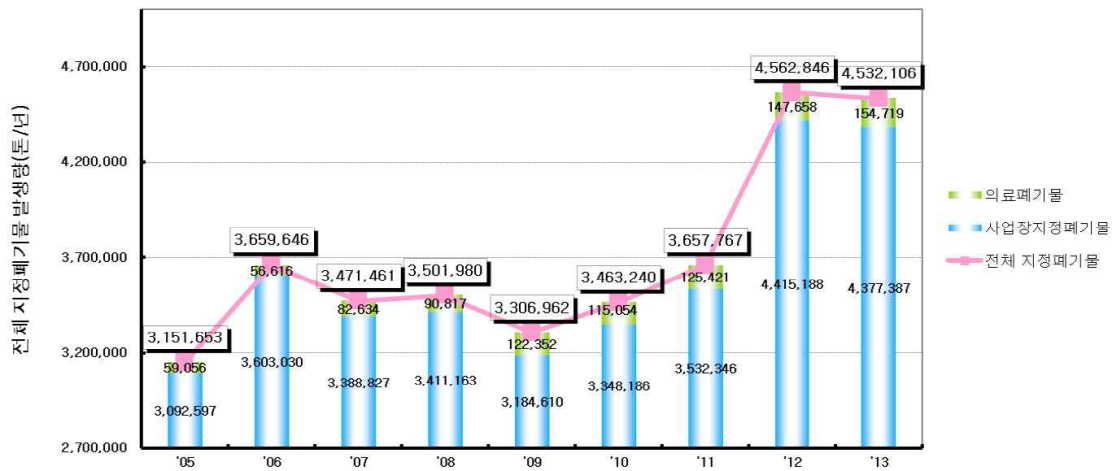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국내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은 유해 특성에 근거하여 <표 4>와 같이 유해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그 종류와 분류체계가 비교적 미흡하여 향후 보다 분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표 4> 유해 폐기물의 종류와 구분

| 종 류                                                | 특 성  | 구 분                                                                           |
|----------------------------------------------------|------|-------------------------------------------------------------------------------|
| 폐산, 폐알칼리                                           | 부식성  |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pH가 2.0 이하인 강산<br>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pH가 12.5 이상인 강알칼리 (KOH 및 NaOH 포함) |
| 폐 유                                                | 인화성  | 기름 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                                                             |
| 폐유기용제                                              | 반응성  | 할로겐족을 함유한 화합물, 기타 유기 용제 포함                                                    |
|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 난분해성 | 합성수지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인화성  | 페인트와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도장시설에서 발생한 것                        |
| 폐 석 면                                              | 유해성  | 석면의 제거 가공 시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한 것<br>석면의 제거 작업에서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포함    |
| 슬러지류, 폐흡수제, 폐흡착제,                                  | 용출특성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시안 등 유해물질 함유하여 용출 가능성이 있는 것                        |
| 폐 농 약                                              | 유해성  | 농약의 제조 또는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것                                                        |
| PCB함유 폐기물                                          | 유해성  | 액체 상태의 것으로 2.0 mg/L 이상 함유한 것<br>액체 상태 이외의 것은 용출액 0.003 mg/L 이상 함유한 것          |
| 오니류(슬러지류-폐수 처리오니, 공정오니)                            | 유해성  | 수분함량이 95% 미만이어가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                                              |
| 폐유독물                                               | 유해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                                                |
|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조각, 조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및 폐촉매 | 용출특성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시안 등 유해물질 함유하여 용출 가능성이 있는 것                        |
| 의료 폐기물                                             | 유해성  | 의료기관이나 실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                                                      |
| 기 타                                                |      |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국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기준 약 4,532,106톤으로 2005년 3,151,653톤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 폐기물은 2013년 기준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약 3.4%(154,710톤)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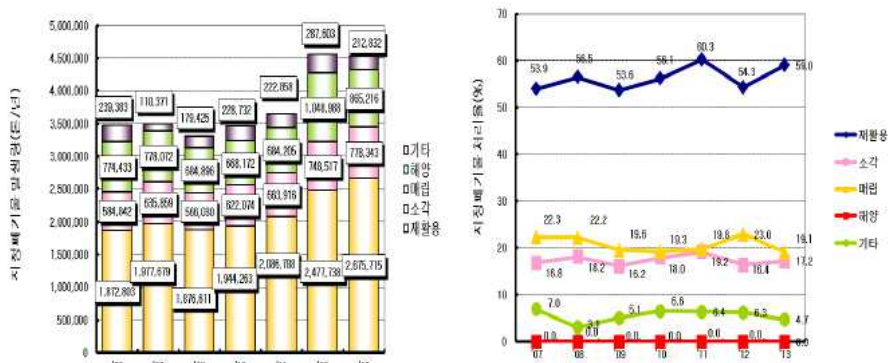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출처: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4)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을 <표 5>에 나타내었다. 전체 지정폐기물 중에서 폐유기용제, 폐유, 폐산, 분진류 등이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한 지정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현황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2013년 기준 전체 지정폐기물 방법별 처리 현황은 재활용이 5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매립이 19.1%, 소각 17.2%, 그리고 기타 4.7%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우리나라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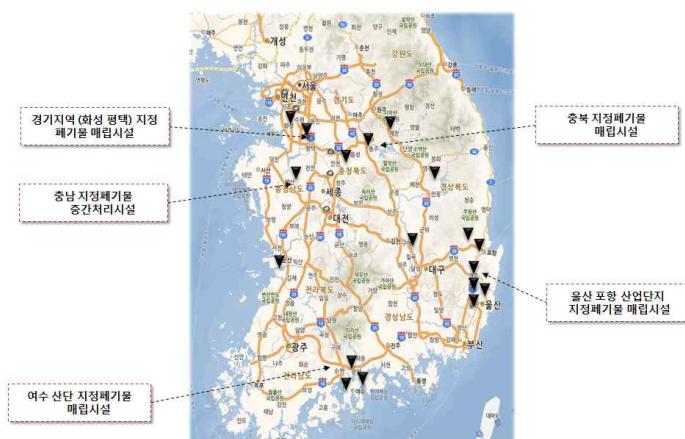
| 구분        | 2007년도    |      | 2008년도    |      | 2009년도    |      | 2010년도    |      | 2011년도    |      | 2012년도    |      | 2013년도    |      |
|-----------|-----------|------|-----------|------|-----------|------|-----------|------|-----------|------|-----------|------|-----------|------|
|           | 발생량       | 구성비  | 발생량       | 구성비  | 발생량       | 구성비  | 발생량       | 구성비  | 발생량       | 구성비  | 발생량       | 구성비  | 발생량       | 구성비  |
| 합계        | 3,471,461 | 100  | 3,501,980 | 100  | 3,306,962 | 100  | 3,463,240 | 100  | 3,657,767 | 100  | 4,562,846 | 100  | 4,532,106 | 100  |
| 폐산        | 677,246   | 19.5 | 623,751   | 17.8 | 511,636   | 15.5 | 562,112   | 16.2 | 567,525   | 15.5 | 666,350   | 14.6 | 695,874   | 15.4 |
| 폐알칼리      | 56,392    | 1.6  | 55,169    | 1.6  | 46,355    | 1.4  | 52,243    | 1.5  | 59,623    | 1.6  | 68,196    | 1.5  | 63,916    | 1.4  |
| 폐유        | 731,602   | 21.1 | 638,554   | 19.9 | 724,274   | 21.9 | 633,315   | 18.3 | 798,167   | 21.8 | 895,992   | 19.6 | 890,244   | 19.6 |
| 폐유기용제     | 651,232   | 18.8 | 754,218   | 21.5 | 682,801   | 20.6 | 850,929   | 24.6 | 741,703   | 20.3 | 1,010,926 | 22.2 | 1,056,801 | 23.3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28,061    | 0.8  | 27,592    | 0.8  | 12,717    | 0.4  | 11,777    | 0.3  | 21,310    | 0.6  | 19,500    | 0.4  | 14,848    | 0.3  |
| 분진류       | 466,237   | 13.4 | 474,797   | 13.6 | 456,670   | 13.8 | 499,027   | 14.4 | 550,804   | 15.1 | 549,370   | 12.1 | 617,995   | 13.6 |
| 오니류       | 269,433   | 7.8  | 266,081   | 7.6  | 221,270   | 6.7  | 223,796   | 6.5  | 260,643   | 7.1  | 352,274   | 7.7  | 361,832   | 8.0  |
| 의료폐기물     | 82,634    | 2.3  | 90,817    | 2.6  | 122,352   | 3.7  | 115,054   | 3.3  | 125,421   | 3.4  | 147,658   | 3.2  | 154,719   | 3.4  |
| 기타        | 508,624   | 14.7 | 511,001   | 14.6 | 528,887   | 16   | 514,987   | 14.9 | 532,571   | 14.6 | 852,580   | 18.7 | 676,277   | 15.0 |

(출처: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07~2014)



[그림 7] 우리나라 지정폐기물의 처리 현황 추이  
(출처: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07~2014)

국내 지정폐기물의 최종 처분 매립지는 총 19개소가 존재하고, 자가매립시설 6개소를 포함하면 약 25개소가 존재한다. 대부분은 관리형 매립지의 형태로서 차단형 매립지는 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지정폐기물 최종매립지는 주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경북과 울산지역에 9곳이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매립 시설은 전남 3곳, 경기도 2곳, 충북 2곳, 전북 1곳, 충남 1곳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지정폐기물의 매립면적은 1,113,447m<sup>2</sup>, 매립용량은 17,325,601m<sup>3</sup>, 기사용량 9,9652,852m<sup>3</sup>, 잔여용량은 7,772,749m<sup>3</sup>, 2012년 매립량은 1,013,609톤으로 나타났다. 겉보기 밀도를 1.3으로 고려하고 추가 지정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정폐기물 매립지 사용 연한은 약 10년으로 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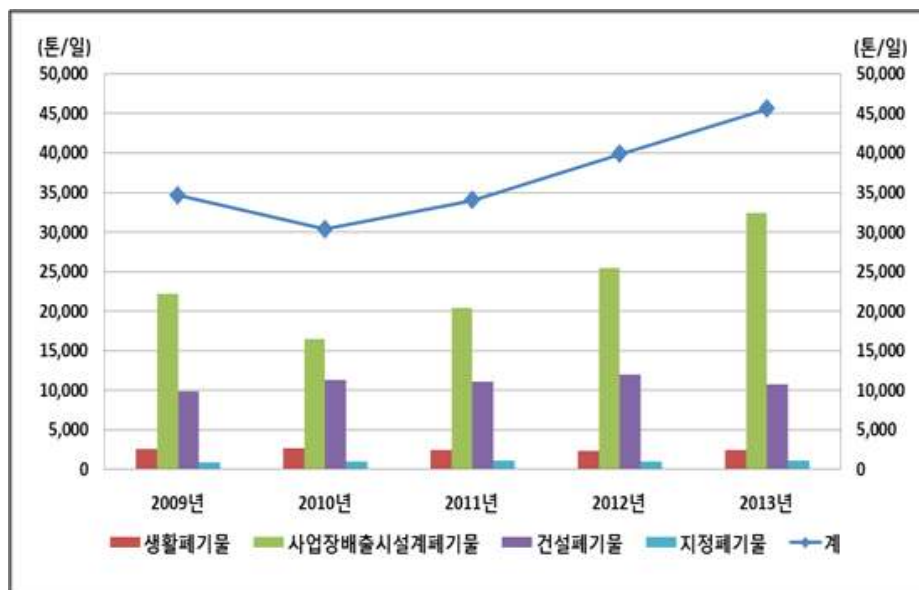


[그림 8] 국내 지정폐기물의 매립지 분포 현황

## 2. 충남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 1) 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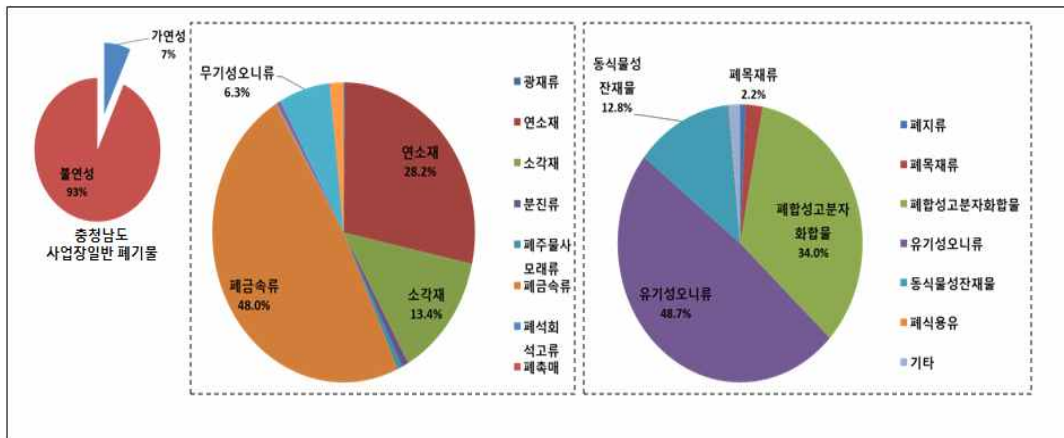
충남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기준 약 34,663톤/일에서 2013년 기준 약 45,585톤/일으로 약 31.5%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은 2009년 2,551톤/일에서 2013년 2,411톤/일로서 소폭 감소하였고, 건설폐기물은 약 하루 만톤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이하 사업장폐기물)은 2010년 약 17,000톤/일에서 약 31,500톤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71%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차지하였다.



[그림 9] 2013년 충남의 총 폐기물 발생량 및 구성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 2)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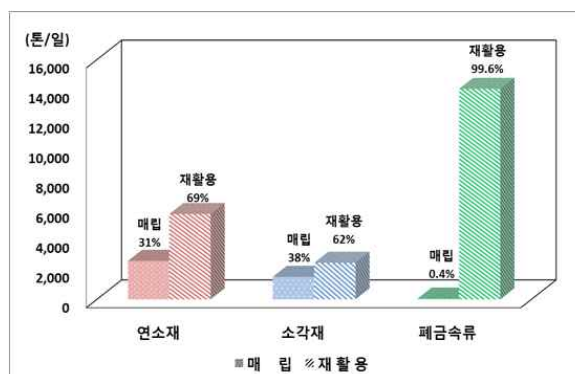
충남의 사업장폐기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금속류, 연소재(석탄재), 소각재, 무기성 오니류 등 불연성 성분으로 전체의 약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는 가연성 성분으로 유기성 오니류,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0) 2013년 충남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구성비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충남 사업장폐기물의 지역별 발생 특성을 <표 6>에 나타내었다. 주로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태안, 보령, 당진, 서천 등)에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이 높고, 이는 주로 석탄재 발생량 높기 때문이다. 특히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데, 이는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이 크기 때문 이고, 이러한 금속류 폐기물을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다.

충남 사업장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연성 성분(폐금속류, 연소재, 소각재)은 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고 있다 [그림 11]. 폐금속류는 전량 재활용 되고 있으며, 연소재(석탄재)와 소각재의 재활용률은 각각 69%, 62%를 나타내 었으며 나머지는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2013년 충남 사업장 폐기물(불연성)의 처리 방법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표 6〉 충남의 폐기물 발생 현황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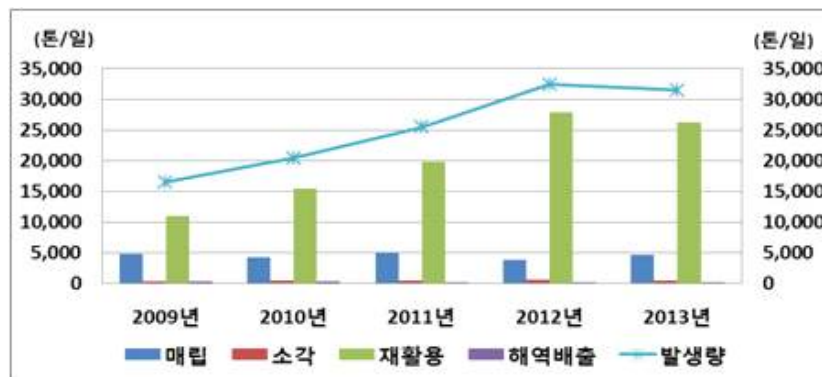
(단위: 톤/일)

| 시·군별 | 계        | 생활폐기물   | 사업장<br>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br>(톤/년) |
|------|----------|---------|--------------|---------|----------------|
| 천안시  | 3,326.9  | 1,077.7 | 851.0        | 1,398.2 | 92,750.0       |
| 공주시  | 1,099.3  | 130.7   | 15.1         | 953.5   | 16,221.8       |
| 보령시  | 4,382.9  | 111.7   | 3,780.4      | 490.8   | 2,493.4        |
| 아산시  | 3,053.8  | 324.7   | 1,168.0      | 1,561.1 | 192,456.2      |
| 서산시  | 1,321.9  | 178.9   | 375.3        | 767.7   | 53,734.8       |
| 논산시  | 1,322.4  | 176.0   | 247.0        | 899.4   | 6,367.2        |
| 계룡시  | 919.9    | 47.7    | 19.5         | 852.7   | 607.1          |
| 당진시  | 21,590.2 | 150.7   | 20,229.3     | 1,210.2 | 94,947.2       |
| 금산군  | 338.1    | 55.9    | 83.8         | 198.4   | 3,682.1        |
| 부여군  | 472.6    | 75.2    | 40.5         | 356.9   | 1,030.9        |
| 서천군  | 1,349.5  | 42.7    | 1,029.2      | 277.6   | 1,996.4        |
| 청양군  | 459.3    | 28.3    | 45.5         | 385.5   | 1,642.1        |
| 홍성군  | 935.1    | 67.9    | 104.1        | 763.1   | 831.9          |
| 예산군  | 651.5    | 48.3    | 112.5        | 490.7   | 4,411.0        |
| 태안군  | 3,897.3  | 66.2    | 3,390.2      | 440.9   | 1,803.9        |

주) 계 = 생활폐기물 +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 건설폐기물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환경부,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최근 5년간 (2009년~2013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현황은 [그림 4]와 같이 주로 재활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2009년 약 16,500톤/일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되거나 매립되었다. 2013년은 약 31,500톤/일로서 약 83%가 재활용되었고, 나머지 14.9%가 매립되었다.



〈그림 12〉 2013년 충남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법  
(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2014)

충남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현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충남에는 총 23개 매립시설이 있으며, 이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총 16개 시설이고, 나머지 7개는 자가처리업체이다. 매립지 면적은 지자체에 비해 자가처리업체(주로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지에 해당함)가 훨씬 크고, 약 12배에 달한다.

<표 7> 충남 폐기물 매립시설의 현황

| 구분     | 시설수<br>(개소) | 총매립지<br>면적(㎡) | 총매립<br>용량(㎥) | 기매립량<br>(㎥) | 잔여매립<br>가능량(㎥) | 사용<br>기간 | 관리인원<br>(명) |
|--------|-------------|---------------|--------------|-------------|----------------|----------|-------------|
| 지방자치단체 | 16          | 628,462       | 7,428,629    | 3,682,667   | 3,745,962      | -        | 63          |
| 자가처리업체 | 7           | 7,529,272     | 53,791,666   | 27,796,898  | 25,994,768     | -        | 25          |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표 8> 충남 폐기물 매립시설의 현황(지방자치단체)

| 시군  | 소재지              | 총매립지<br>면적(㎡) | 총매립<br>용량(㎥) | 기매립량<br>(㎥) | 잔여매립<br>가능량(㎥) | 사용<br>기간 | 관리<br>인원<br>(명) |
|-----|------------------|---------------|--------------|-------------|----------------|----------|-----------------|
| 천안시 | 동남구 목천읍 웅원리 267  | 107,906       | 2,120,837    | 731,789     | 1,389,048      | 03~32    | 8               |
| 공주시 | 검상동 산 7-4        | 45,250        | 787,260      | 496,361     | 290,899        | 99~31    | 2               |
| 보령시 | 남곡동 산 127-1      | 61,261        | 739,056      | 667,001     | 72,055         | 99~21    | 3               |
| 아산시 | 구성리 282-3        | 11,158        | 88,000       | 88,000      | -              | 08~10    | 4               |
| 서산시 | 대산읍 대죽리 715      | 32,057        | 182,129      | 182,129     | -              | 09~12    | 3               |
|     | 양대11로 100        | 17,600        | 124,800      | 61,258      | 63,542         | 12~16    | 6               |
| 논산시 | 은진면 버들길 137      | 54,300        | 600,894      | 234,856     | 366,038        | 02~27    | 6               |
| 계룡시 | 두마면 제1산업단로 67    | 13,872        | 190,000      | 136,943     | 53,057         | 00~54    | 3               |
| 당진시 | 송산면 가곡리 499      | 71,786        | 683,887      | 423,978     | 259,909        | 00~26    | 7               |
| 금산군 | 추부면 용지리 430      | 15,385        | 148,937      | 134,394     | 14,543         | 07~19    | 5               |
| 부여군 | 세도면 수고리 611      | 51,713        | 539,100      | 253,965     | 285,135        | 97~37    | 6               |
| 서천군 | 비인면 관리 547-1     | 37,498        | 292,400      | 159,400     | 133,000        | 94~40    | 3               |
| 청양군 | 청양읍 충절로 1012-66  | 14,393        | 101,000      | 62,005      | 38,995         | 04~28    | 1               |
| 홍성군 | 홍북면 중계리 525      | 49,464        | 338,498      | 214,413     | 124,085        | 97~16    | 1               |
| 예산군 | 대흥면 차동로 1661-157 | 26,443        | 326,351      | 35,244      | 291,107        | 04~28    | 1               |
| 태안군 | 태안읍 삭선길 354      | 18,376        | 166,000      | 18,038      | 147,962        | 00~20    | 2               |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표 9〉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석탄재) 매립시설 현황(자가처리업체)

| 시군  | 업체명                 | 총매립지<br>면적<br>(㎡) | 총매립<br>용량<br>(㎡) | 기매립량<br>(㎡) | 잔여매립<br>가능량<br>(㎡) | 사용<br>기간  | 관리인원<br>(명) |
|-----|---------------------|-------------------|------------------|-------------|--------------------|-----------|-------------|
| 보령시 | 한국중부발전(주)<br>보령화력본부 | 800,700           | 7,796,342        | 7,596,639   | 199,703            | 1986~2030 | 1           |
|     |                     | 1,724,664         | 13,313,585       | 3,439,780   | 9,873,805          | 2001~2019 | 1           |
| 당진시 | 현대제철(주)             | 22,723            | 249,739          | 23,364      | 226,375            | 2010~2021 | 3           |
|     | 한국동서발전(주)<br>당진화력   | 2,131,000         | 17,560,000       | 5,218,001   | 12,341,999         | 1999~2020 | 1           |
| 서천군 | 한국중부발전<br>서천화력발전소   | 638,515           | 6,341,000        | 5,529,583   | 811,417            | 1989~2014 | 3           |
| 태안군 | 한국서부발전(주)<br>태안발전본부 | 1,251,670         | 5,311,000        | 4,078,357   | 1,232,643          | 1993~2058 | 8           |
|     |                     | 960,000           | 3,220,000        | 1,911,174   | 1,308,826          | 2008~2058 | 8           |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4)

2015년 기준 충남지역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분포는 주로 아산, 태안, 보령, 당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총 11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지는 5개소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 매립지를 제외한 6개소 중 2개소는 아산과 태안 사업장폐기물 공공 매립시설이고, 나머지 4개소의 경우는 자가처리 매립시설 또는 민간처리 매립시설로 나타났다.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잔여 매립용량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분포 현황 (2015년 기준)

### 3.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

#### 1)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추가 건설 재검토

충남지역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지 추가 조성은 국가 및 충남도 폐기물의 자원 순환 정책에 근거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폐기물의 관리 정책은 발생 억제, 재사용, 자원순환, 에너지 회수, 매립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다. 매립은 가장 비선호적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폐기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주변 환경오염 피해, 매립 후 30년 사후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매립 최소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매립 시 매립세를 부과하여 매립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폐기물의 자원순환단지, 환경에너지타운, 바이오매스타운 등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 정책을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영역에서 폐기물 매립지의 추가 건설은 국가 자원순환정책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산업체 업종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통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자원순환목표 할당과 평가가 일어날 예정이어서 자원순환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충남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수요 증가 요인

현재 충남지역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갈등과 추가 수요 요구에는 민간 업체의 이익 추구 극대화과 사후 관리 의무 이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기인한다. 아직까지 매립 비용은 소각이나 재활용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매립을 선호하고 있다. 지역주민 마을 거리와 상관없이 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남 지역의 매립지로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과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을 정하여 매립지 입지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국가 도로망 확충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확보되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남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매립지는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을 사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및 제도상 미흡으로 사업자가 체계적인 매립지 사후 관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후 매립지 관리 비용 부담이 적고, 최근 사업자의 책임 의식 결여가 문제시 되고 있다.

### 3)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수요 적정성

앞서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31,491톤/일으로 나타났고, 이중 불연성 성분은 29,343톤/일이고, 가연성은 2,148톤/일로 나타났다. 이중 약 83% (26,212톤/일)는 재활용되고, 약 14.9%(4,695톤/일)는 매립되고 나머지 1.6%(495톤/일) 소각 처리되었다. 그리고 매립된 4,695톤/일 중에서 석탄재의 자가 매립 비율은 약 65% 이상(3,500톤/일)을 차지한다. 결국 충남지역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해야 할 최대 가능량은 2012년 기준 약 780톤/일로서 최대 1,000톤/일 이하로 예상된다. 향후 자원순환정책 강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따른 매립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 매립량은 현재 충남지역에 위치한 민간 또는 지자체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3곳(아산시, 보령시-민간 운영매립지, 태안군-지자체 운영 매립지)에서 현재 충분히 수용 가능한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령시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용량 1,144,700 m<sup>3</sup>에 달하고 있다. 향후 충남 기존 매립지의 용량, 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재활용 정책 강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적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충남지역의 폐기물 발생특성과 처리 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의 추가 건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4.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 1)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전과정 단계별 이해당사자 참여 소통 필요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선정 단계, 조성 및 운영단계, 사후 관리 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지역 주민,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차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신청과 허가는 주로 사업자와 행정기관 (지자체, 지방 환경청)에만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매립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매립지의 경우는 입지 선정 단계와 사후 관리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사업전과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기술하고 있어 충분한 예측과 평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성 및 운영 단계,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지역주민, 사업자, 관련 전문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소통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의견수렴과 소통, 논의와 협의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조성에 따른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자와 지자체, 지방 환경청 간의 행정적 절차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소통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과 충남도 차원의 법적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2)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사업자 자격 기준 강화 필요

앞서 매립지의 침출수 누출, 가스 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 주변 환경 등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매립 종료 후 매립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사용 종료 신고를 미루

거나 하지 않아 매립지 사후 관리를 미이행 사례가 종종 있다. 현재 매립지 사용 종료 후에도 종료 및 폐쇄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고의 부도, 종료 미신고 및 방치, 폐쇄 지연 등 매립지 사후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여와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 신청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과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사업자의 자격 기준 강화와 부적격자 심사를 통해 매립지의 운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매립지는 조성 및 운영 기간을 짧고 매립 종료와 매립지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기간(최소 30년)은 상대적으로 길고 중요하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 폐기물이 혼합되어 매립되고 성분 역시 매우 많고 종종 유해한 물질을 함유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실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폐기물 종류와 성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반입되어 매립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매립지 내 화재와 폭발, 그리고 침출수 누출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환경오염 사례로서는 침출수에 의한 주변 지역 토양, 지하수, 기타 수계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특히 침출수의 철저한 차단, 집수와 처리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 제천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에어돔 약 40m 가량이 찢어져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빗물이 폐기물 매립지로 유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 폐기물 매립지 사업자는 부도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 충북 제천시가 지방 재정을 투자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를 임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만약 빗물이 매립지로 유입되어 침출수 발생 시 막대한 비용을 제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0>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침출수 누출 관련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0〉 최근 국내 매립지의 침출수 누출 사례

| 매립지                   | 시기       | 개요                                                                                    |
|-----------------------|----------|---------------------------------------------------------------------------------------|
| 경남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 2009년 7월 | 침출수가 누출돼 고성만 해양으로 방출, 한국환경공단 진단결과 차수막 파손은 확인됐으나 파손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매립장 조기 폐쇄하고 새로운 매립장 준공 |
| 광영 지정폐기물매립장           | 2009년 8월 | 제방 일부가 붕괴돼 침출수 다량 누출                                                                  |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2차)    | 2010년 7월 | 제방 근처 도로상으로 침출수가 누출돼 마을 소하천 오염, 침출수 누출탐지 시스템 측정 후 누출위치 보수                             |
| 경북 구미시 지정폐기물 매립장      | 2011년 7월 | 침출수 인근 저수지로 누출돼 물고기 집단폐사·차수막 이음새 파손돼 침출수 누출                                           |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 2012년    | 에어돔이 붕괴 후 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 누출                                                          |
| 인천청라지구 신도시공사장 폐기물 매립지 | 2012년    | 개발 과정에서 침출수 누출, 침출수 처리장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
| 경북 포항시 폐기물매립장         |          | 시민모임측, 침출수 누출은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미비와 외부 응력에 발생한 균열때문이라고 주장                                 |
| 울산광역시 산업폐기물업체         |          | 최종처리업체, 사측이 파손된 매립장 바닥 차수막을 2-3년간 방치해 침출수 누출돼 토양 및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                  |
| 제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        | 2014년    | 매립장내 전용하수관 연결되지 않아 발생                                                                 |
| 경주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 2015년    | 매립지 사면 침출수 누출로 인한 매립지 운영 가동 중단 (보수 중)                                                 |

아직까지 국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조성 및 운영, 사후관리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매립지 운영 관리 전문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매립지 확보난과 폐기물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매립지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술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 4)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사후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시설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최종복토를 실시하고 사용종류 후 검사결과 적합통보를 받아야하며, 사용 종료 이후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30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매립시설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 누출, 지반침하, 매립장 붕괴, 매립 가스 발생, 악취 발생 등의 주변 환경오염 위험이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 매립시설 중 매립면적이 3,300m<sup>2</sup> 이상인 설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는 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주변 환경 오염의 조사 비용만 예치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이 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민간 사업장폐기물의 사후관리 및 환경피해 비용을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시설의 최종복토 비용, 환경피해 비용, 매립시설 사후 관리 검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인상 현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매립완료 후 사용종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용종료 직전에 매립지 관리 포기, 고의 부도 및 방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는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나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점에서 폐기물 매립지의 종료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고의부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사업자에 대한 이력관리와 정보 파악을 통해 지방환경청의 매립지 사업자의 사전 검토와 허가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인상 현실화와 함께 매립종료 이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시설 운영 시 초기 단계 또는 중간 매립 단계 시점 이전에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완납하여 고의부도 및 종료신고 불이행, 방치 사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후 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사후 관리 철저와 안정적 관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IV.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관리의 공공성 강화방안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 1) 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폐기물 분류의 핵심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원칙은 발생원 기준이다. 동일 성상의 동일 종류의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 발생원에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되고,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다시 구분된다. 지정폐기물 역시 의료폐기물과 기타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형건물이나 유통매장,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장생활계라고 부른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함께 묶어서 생활계폐기물이라고 부른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역시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배출자에게 처리책임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 즉 종량제 봉투(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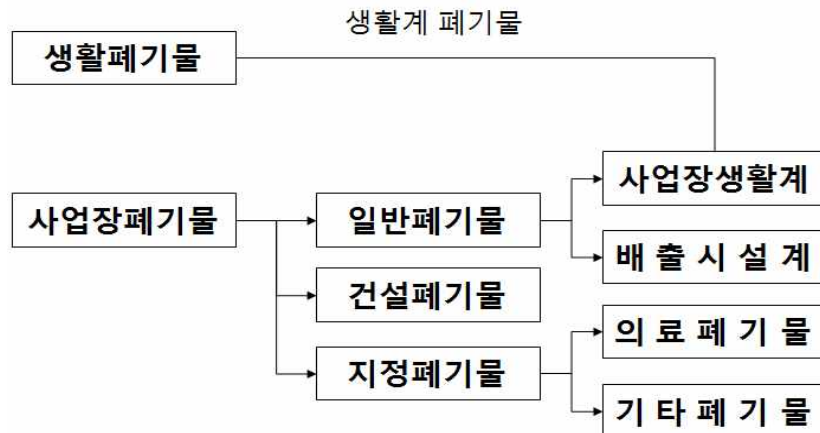
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대개 모든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산업시설의 가동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결국 공장시설의 가동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이라고 쉽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관리기본법” 상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5톤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 발생량이 적을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기물배출자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분을 함유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지정폐기물인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일반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양적 개념이 적용되어 발생량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을 기준으로 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발생량에 관계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만약 유해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배출될 경우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 내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유해성은 유독성,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기준이상일 경우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경우와 유해성분 함유량에 대한 고려없이 명백하게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가장 큰 기준인데, 쉽게 이해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나 검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접촉하거나 환자의 몸에서 나온 것들 중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을 보면 폐유나 폐유기용제, 폐페인트나 페레커, PCB폐기물, 폐농약, 폐유독물 등이 있다. 소각재나 광재, 분진 등의 경우에는 중금속 함유량을 기준으로 중금속의 용출기준이 일정량이 이상일 경우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림 14) 폐기물 분류

## 2)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억제<sup>1)</sup>하고, 폐기물의 배출로 인한 주변환경 및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 폐기물 배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단계에서는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국내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시에 양과 독성을 줄여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의 전 단계에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따른 오염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고 환경복원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1) 폐기물의 감량은 발생억제와 배출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억제는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배출억제는 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배출원에서 자체 처리나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이 배출원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해당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퇴비로 활용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억제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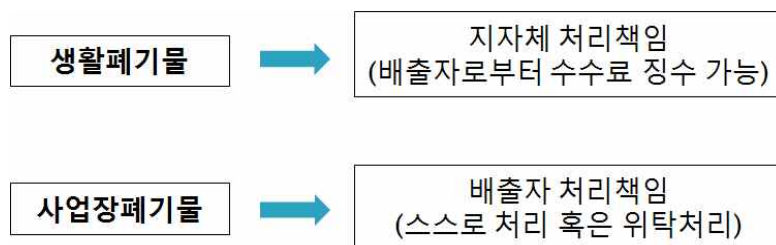


[그림 15] 폐기물관리 기본원칙

### 3) 폐기물처리 책임주체

폐기물처리의 책임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처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며, 배출자에게 처리책임을 부과할 경우 다수의 배출원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고 물리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은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즉 가정 등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지자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주로 관리되고, 영리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량 혹은 유독한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혹은 민간처리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관리된다.



[그림 16] 폐기물 처리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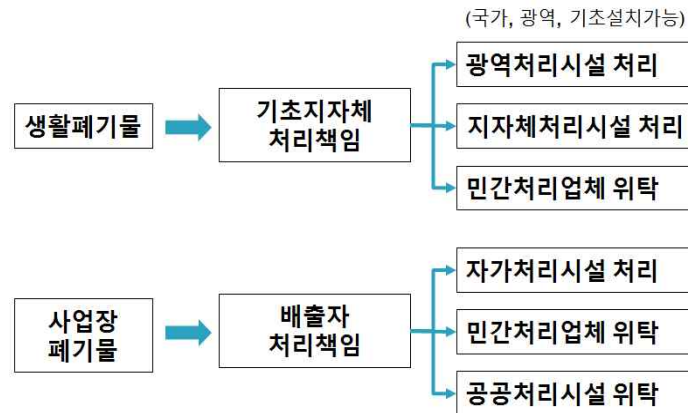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능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의 처리책임 하에 지자체가 지자체별로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국가나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간 협의하여 설치한 광역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공공처리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임 하에 사업장 내에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있거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대개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하는 편이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이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것을 지자체와 주민협약 사항에 명시하여 반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중에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다량으로 반입하는 곳은 수도권매립지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총반입량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매립지운영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7) 폐기물 종류별 처리가능경로

#### 4) 매립시설 설치절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배출자가 자가처리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의 영위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자가처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승인을 받으면 되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위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가 포함된다.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sup>2)</sup>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한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기관<sup>3)</sup>에 제출한 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아야 한다. 매립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sup>4)</sup>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폐기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후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폐기물매립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종합처분업은 폐기물 소각처리업과 매립처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기관이며,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청이 허가기관이다.

4) 매립시설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혹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매립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된 후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매립시설의 성능의 이상이 없다는 설치검사를 통과해야만 매립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8)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절차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별도로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동 법은 “폐기물관리법”의 매립시설 설치절차에 비해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의 절차규정을 따를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설치절차는 의제처리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지후보지를 고시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입지가 결정되면 매립시설의 경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한 후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매립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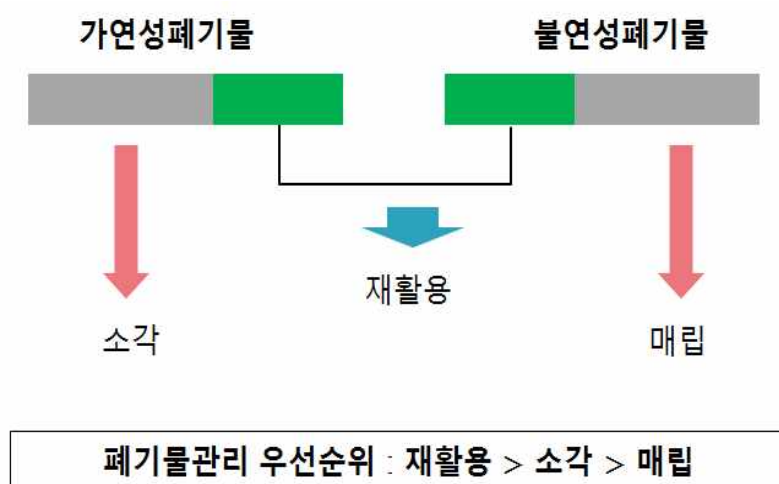
(그림 19) 공공매립시설 설치절차

매립시설은 운영 중에 3년 주기로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변 대기, 토양, 지하수, 지표수에 대한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매립시설이 사용종료 된 이후에는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비용 혹은 사용종료 후 침출수 누출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관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 1) 사업장폐기물 관리 우선순위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원칙 혹은 관리의 우선순위를 보면,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은 우선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을 하여야 하며, 매립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폐기물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하고, 소각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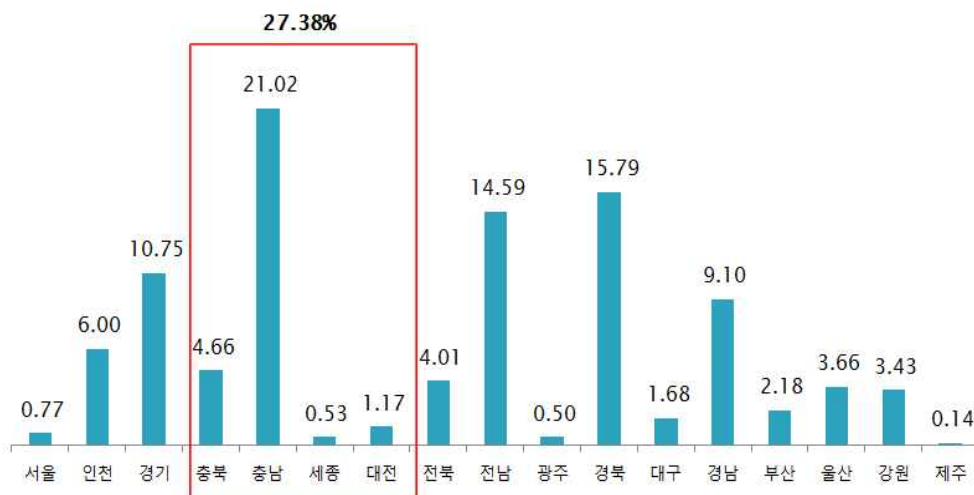
[그림 20]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 2)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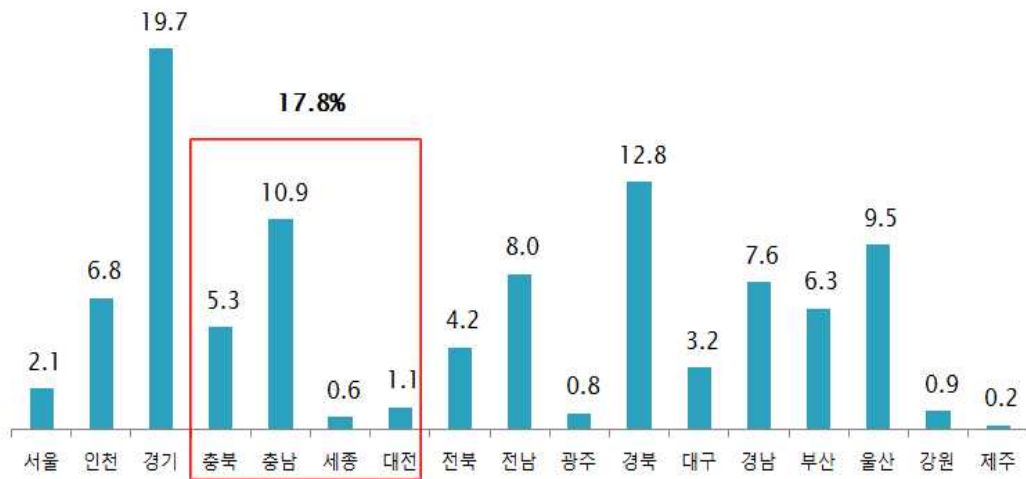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 149,815톤이다. 이 중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 31,419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양은 전국발생량 대비 27.4%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최고인데, 충남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현대제철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슬래그 및 석탄재의 발생량이 원인이다.

2013년 기준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기타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 11,933톤이다.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하루 1,301톤으로 경기도와 경북 지역 다음으로 발생량이 많다.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은 전국 발생량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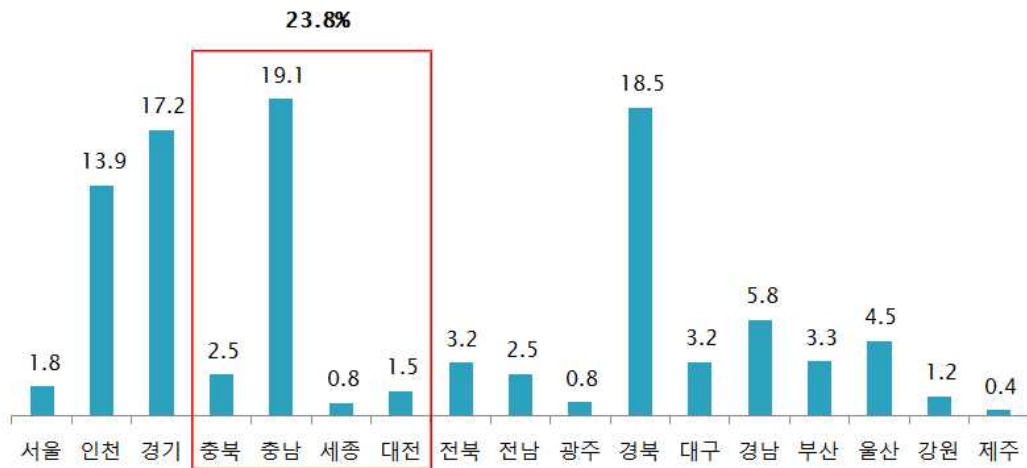
(그림 22) 2013년 기준 지정폐기물 발생량

자료 : 환경부, 2013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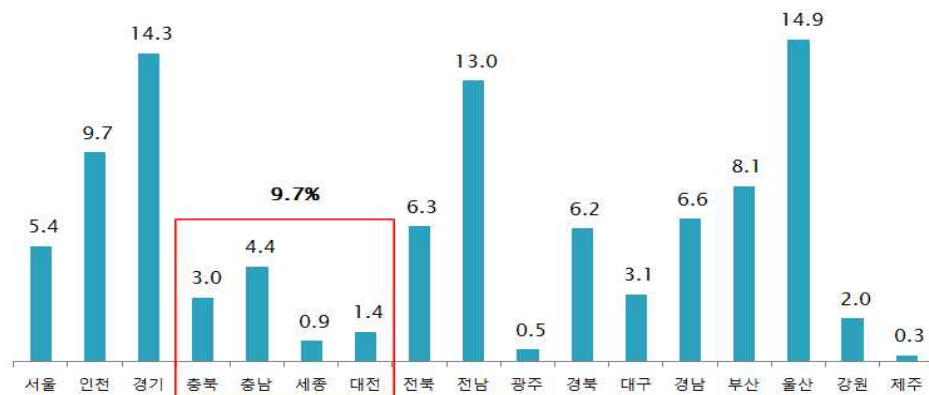
### 3) 사업장폐기물 매립현황

2013년 기준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연간 매립량은 899만톤이다.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량은 연간 171만톤으로 전국 매립량 대비 19.1%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매립률이 높은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화력발전소의 자체 매립시설에서 매립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몇 개의 대형시설에서 다량의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발생하여 다량이 자체 매립시설에서 매립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매립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연간 매립량은 86만톤이다.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매립되는량은 3.8만톤으로 전국 매립량의 4.4%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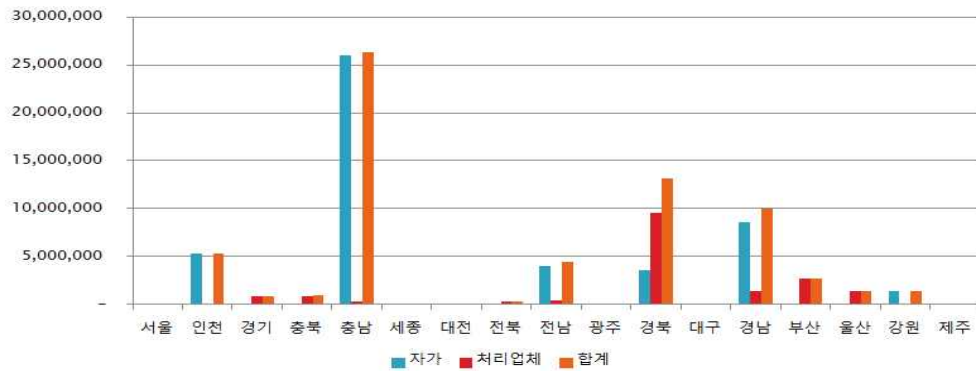
[그림 23]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  
 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24] 2013년 기준 지정폐기물 매립량  
 자료 : 환경부, 2013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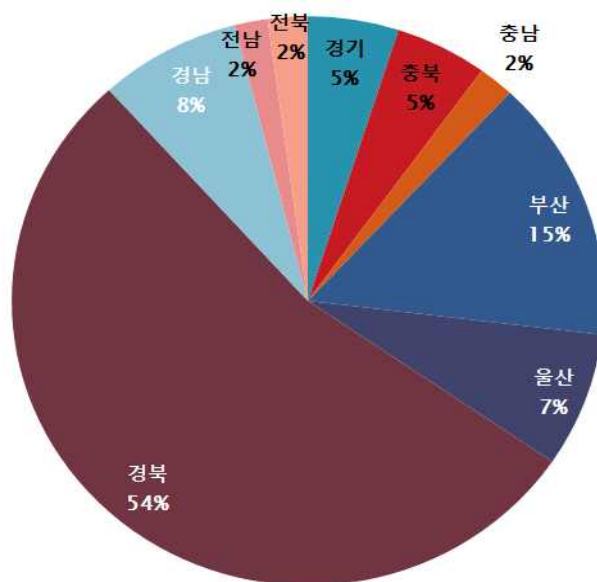
#### 4)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매립용량은 2013년 기준으로 66,877m<sup>3</sup>가 남아 있다. 잔여매립용량 중 73%는 자가매립시설의 용량이며, 최종처분업체의 용량은 27%에 불과하다. 매립시설 잔여용량 중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자가매립시설의 잔여용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매립지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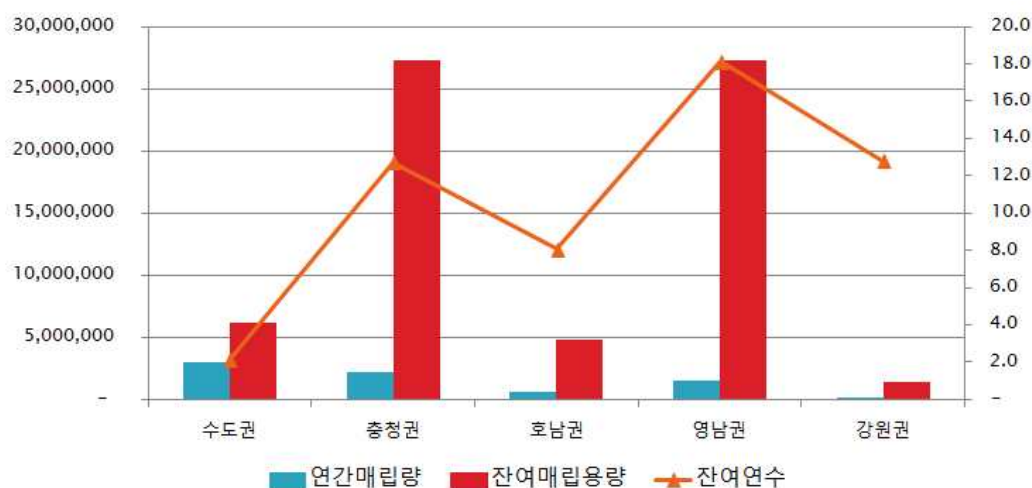
[그림 25]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시설 잔여용량(m³)  
 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가매립시설을 제외하고 최종처분업체의 매립시설 잔여용량을 보면, 경북,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최종처분업체의 매립시설 잔여용량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영남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특히 매립대상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매립시설 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26]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 잔여용량 지역분포  
 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역별 매립시설의 잔여연수(지역별 잔여매립총용량/지역별 연간매립량)를 보면, 영남권 18.1년, 충청권 12.7년, 강원권 12.8년, 호남권 8.1년, 수도권 2.1년으로 전국적으로 매립지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타지역의 매립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부족은 충청권역에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 설치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27] 지역별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잔여연수  
자료 : 환경부, 201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3.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공공성 강화방안

#### 1) 국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문제에 대한 이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세계3대 미항 중 하나로 평가받는 나폴리의 경우에도 2008년 매립지가 종료된 이후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도시가 폐기물로 뒤덮이는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2014년의 경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도 역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에도 2016년 법적 사용종료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끝에 경우 사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 국가 혹은 한 도시의 폐기물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바로 매립률이다. 매립지는 쓰레기의 최종무덤으로 모든 쓰레기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매립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가 없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3R로 대표되는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 역시 핵심은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최종종착지는 쓰레기 매립제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쓰레기 매립제도가 실현될 때 매립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쓰레기 매립제로는 장기적인 비전이며 현실적으로 매립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되, 현재 발생하는 매립수요를 맞추기 위한 매립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현재 충청권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를 둘러싼 문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순을 응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발전의 불균형문제이다. 지역불균등 발전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의 주변지역을 주변화시키고, 발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을 주변지역으로 전가시킨다. 수도권지역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주변지역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역이 개발되면 개발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까지 확보하여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은 이미 확보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가면서 대체매립지를 수도권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역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가 집중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민간처리시장에서 관리되고 있고, 민간

처리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sup>5)</sup> 입지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비용이 저렴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한 후 타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국내 사업장폐기물관리제도 또한 충청 권역의 폐기물매립시설 입지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1990년대에 사업장폐기물 관리방향을 둘러싸고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방향성이 대립하였으나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규제완화 및 민영화 흐름 속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분야는 민간주도 시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매립을 위한 매립시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민간 처리업자가 설치를 주도하게 되었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민간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되어 버렸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역과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시설 확보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발생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하는 생산활동에 따른 이익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향유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폐기물처리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민간폐기물매립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평화로운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송이나 집회 등 입지갈등에 따른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거나 입지갈등에 따른 농촌공동체가 분열되거나 붕괴되는 것 또한 환경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은 민간관리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민간업자와 주민들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확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5)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지역적인 영업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국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문제 해결방안

현재 충청권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갈등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과 폐기물이 매립되는 지역의 불일치문제이다. 이 문제는 비용과 편익의 일치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지역 간 사업장폐기물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공공주도로 설치하여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안이 있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간 사업장폐기물 이동금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사업장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금지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한해서 지정된 권역 내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논의 중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충분한 용량의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수도권역에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이동 금지 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권역별 내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역시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입지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의 무분별한 지역 간 이동을 규제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원 처리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주도로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가능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막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둘러싼 입지갈등에 공공처리시설 입지갈등까지 추가되어 입지갈등이 더욱 복잡해 질 우려도 있고, 재원마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한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되 설치 및 운영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지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한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허가절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인허가기관에 제출한 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현재 인허가 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크게 타법저촉여부<sup>6)</sup>와 환경성 검토, 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배제되어 있다. 즉,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비공식적으로 접한 주민들이 민원의 형식으로 인허가기관에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게 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서는 오히려 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인허가기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밖에 없으며, 주민의견 배제라는 절차적 하자는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입지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예정지역에 대한 평가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들의 기술적 평가와 함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바라보는 맥락적 평가가 더해져야 한다.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주민의 삶과 결부된 맥락적 정보가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전문지식에 의해 폄하될 때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최근접결정의 원칙이 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

6) 매립시설 설치예정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농지법” 등 다른 입지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관점이 반영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갈등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법률로 뒷받침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법률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인허가업무 처리 시에 지역주민대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sup>7)</sup>

둘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지역과 배출지역의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불경제 시설이다.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경우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해소가 당연히 필요하다. 법적 행정적 절차만으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가 정당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것은 환경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에서 일정비율로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외부불경제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우선 환경부에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매립 처분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하여 징수한 매립처분부담금의 일부를 매립지 입지지역 주변주민들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 간 이동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매립처분 부담금에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민간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폐기물처리비의 일정비율로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

7)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인허가 기관이 환경청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접근할 수 없다.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의 매립시설 관리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충북 왕암 매립지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장폐기물 운영 혹은 사후관리 기간 중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 사후이행보증제도만으로 환경오염피해복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주변지역이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 시설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업장폐기물 매립 시설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매립지를 둘러싼 입지갈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폐기물매립시설은 국가 및 지역의 산업활동을 유지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반 시설임에 틀림이 없지만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야기하는 외부불경제시설임에도 틀림이 없다.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실제 오염피해를 야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민간매립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가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 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입지절차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 하면서 주민들에게 수용하기를 강제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수용하기 힘들 것 이며, 국가기반시설인 매립시설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입지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제로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폐기물배출지역 책임원칙의 적용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무분별한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당면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폐기물 매립 시설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수렴하는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폐기물발생 지역과 처리지역의 불일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과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장폐기물 민간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의 매립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를 현실화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감시를 제도화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